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5.1.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연구용역명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기관명 (사)브랜드평판연구소

책임연구진 및 연구진

책임연구원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엄혜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VPR컨설팅 이사

연구원 강대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 조승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동물원 관련 법률과 제도 현황	2
3. 연구 내용 및 구성	6
II. 대국민 인식 조사	8
1. 조사 분석 개요	8
2. 인구통계학적 특성	8
3. 동물원법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15
3-1. 생태계와 동물에 대한 국민의 환경 공동체적 인식	16
3-2.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현 정부 동물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16
3-3. 동물보호 수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17
3-4. 동물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18
3-5.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후 시행 효과에 대한 예측	19
3-6. 동물원의 주요 사회 기능적 측면에 대한 국민 인식과 그 우선순위	20
4. 각 계층이 생각하는 동물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21
4-1. 동물원법 및 동물복지 관련 찬반 의견에 대한 빈도분석	21
4-2. 교차분석	42
4-3. 대응 분석	62
III. 언론활동 분석	65
1. 동물원법 제정 환경 조성	65
1-1. 동물원법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변화	65
1-2. 쟁점 및 주장	66
1-3. 여론의 변화	68

1-4. 주요 관련 이슈 분석	68
2. 언론보도 분석	72
2-1. 분석 개요	72
2-2. 정량분석	73
2-3. 정성분석	75
 IV. 결론	 84
1. 인식조사 결과요약	84
2. 언론보도 분석 결과요약	85
3. 시사점	86

<표 차례>

<표 1-1> 해외 동물복지 관련 법률	4
<표 2-1> 생태계와 동물에 대한 환경 공동체적 인식 기술통계	16
<표 2-2>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동물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기술통계	17
<표 2-3> 동물보호 수준 개선을 위한 필요 방안 1순위 ~ 3순위	17
<표 2-4> 동물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기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기술통계	19
<표 2-5>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후 시행 효과 예측에 대한 기술통계	20
<표 2-6> 동물원의 주요 사회 기능적 측면에 대한 국민인식 기술통계	21
<표 2-7> 자연 및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응답자 의견	22
<표 2-8> 동물원법 제정 발의 내용에 대한 의견	27
<표 2-9> ‘공연 등을 위한 동물의 인위적 훈련 행위 금지’에 대한 세부 의견	29
<표 2-10>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의견	33
<표 2-11> 동물원법 제정을 통한 개선 여부에 대한 의견	34
<표 2-12> 국내에서의 동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5
<표 2-13> 동물원의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	36
<표 2-14> 동물원의 주요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40
<표 2-15> 교차분석에 활용된 문항의 항목 번호별 내용	43
<표 2-16> 성별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 방안	44
<표 2-17> 거주지역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 방안	46
<표 2-18> 연령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48
<표 2-19> 직업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1
<표 2-20> 학력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3
<표 2-21> 소득수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4
<표 2-22> 혼인 여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6
<표 2-23> 반려동물 양육경험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8
<표 2-24> 가구 형태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60

<표 3-1> 정성분석 대상 매체	73
<표 3-2> 주요 메시지의 근거와 주장	75
<표 3-3> 동물원법 주요 보도 현황	76
<표 3-4> 동물원법 보도에 나타난 주요 메시지	77
<표 3-5> 동물복지 관련 기사 리스트	80
<표 3-6> 동물원법에 관한 사설 및 칼럼 리스트	81

<그림 차례>

<그림 2-1>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감정을 느낀다’에 대한 의견	22
<그림 2-2> ‘인간은 자연과 동물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에 대한 의견	23
<그림 2-3> ‘동물의 삶을 파괴하면 인간도 피해를 입는다’에 대한 의견	23
<그림 2-4> ‘우리는 동식물과 최대한 공존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24
<그림 2-5> ‘생태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에 대한 의견	24
<그림 2-6>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불편함은 견딜 수 있다’에 대한 의견	25
<그림 2-7> ‘동물학대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의견	25
<그림 2-8>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26
<그림 2-9> 동물원 설립 시 정부 허가에 관한 의견	28
<그림 2-10> 공연 등을 위한 동물의 인위적 훈련 행위 금지에 대한 의견	28
<그림 2-11> 사육의 편의를 위해 전기충격기, 채찍 등의 사용 금지에 대한 의견	30
<그림 2-12> 기준 미달의 사육환경에서의 사육행위 금지에 대한 의견	30
<그림 2-13>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전문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31
<그림 2-14> 동물의 사육·관리는 전문 자격이 인증된 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	31
<그림 2-15> 사육 부적합 동물의 사육금지에 대한 의견	32
<그림 2-16> 관람객 안전 보장 시설 의무화에 대한 의견	32
<그림 2-17> 동물원의 야생동물 생태, 종복원,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연구 수행에 대한 의견	33
<그림 2-17>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에 대한 인식	37

<그림 2-18>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기능에 대한 인식	38
<그림 2-19> 멸종 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 기능에 대한 인식	38
<그림 2-20>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에 대한 인식	39
<그림 2-21>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40
<그림 2-22>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41
<그림 2-23> 동물 종 보존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41
<그림 2-24>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42
<그림 2-25> 성별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45
<그림 2-26> 거주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47
<그림 2-27> 연령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50
<그림 2-28> 직업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52
<그림 2-29> 학력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54
<그림 2-30> 소득수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55
<그림 2-31> 혼인 여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57
<그림 2-32> 반려동물 양육경험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	59
<그림 2-33> 가구 형태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61
<그림 2-34> 연령대와 문항간 대응분석 결과	62
<그림 2-35> 직업군과 문항간 대응분석 결과	63
<그림 2-36> 연령과 직업군간 대응분석 결과	64
<그림 3-1> 2014년 1월 7일자 아시아경제에 게재된 제돌이 방류 성과 관련 기사	68
<그림 3-2> 제돌이 방류 관련 지면 게재 기사 이미지	69
<그림 3-3> 서울동물원 호랑이 참사 관련 지면 기사 이미지	70
<그림 3-4> 거제씨월드 관련 지면 게재 기사 이미지	72
<그림 3-5> 동물복지 및 동물원법 보도 건수 추이	74
<그림 3-6> 주요 이슈 보도 건수 (2013~2014년 누적)	74
<그림 3-7> 동물원법 관련 주요 보도 기사 이미지	78
<그림 3-8> 동물복지 관련 주요 기사 이미지	79

I. 서론

1. 연구 목적

현재 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려동물’이란 단어가 보편화 되는 등 동물은 인간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보편화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돌고래쇼를 포함해 동물쇼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2012년 서울대공원에서 제돌이를 방류한 것을 계기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제돌이 방류 이후 2013년 7월 한국 갤럽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30명에게 ‘돌고래 쇼를 하던 돌고래를 돌려보내야 하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은 결과 52%가 찬성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 과반수가 넘는 59%의 응답자는 ‘돌고래 쇼를 그만둬야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3년 9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10월에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동물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실효성이 있는 동물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원법이 통과되면 사육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규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동물원법’ 제정을 둘러싸고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동물원법 제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론을 반영하는 미디어에서는 동물복지 및 동물원법에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동물원법 제정 촉구하기 위한 자료로서 국민 여론 파악 및 분석 및 미디어 여론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¹⁾

1) 동물자유연대는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 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과 교육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내 대표 동물보호 단체다.

2. 동물원 관련 법률과 제도 현황분석

동물원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 규정은 1876년 시행된 영국 동물학대방지법(Cruelty to Animals Act)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동물원의 동물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사육환경 및 수의학적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포획동물의 훈련 및 번식프로그램, 동물의 정신적 복리와 동물 종 및 환경의 보존 문제 등 매우 복잡하고 폭넓게 다루고 있다. 유선봉의 연구(2014)에서도 동물원의 역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휴식처로서의 기능, 두 번째로 동물원 관람객들에게 동물의 행동, 습성, 번식 등에 관한 정보전달 및 서식환경, 동물보호의 중요성에 관해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은 각종 동물(군)의 서식지 외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동물(군)에 대한 관찰과 과학적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술하였다.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에서 관리규칙 제3조 1항을 통해 동물원을 “동물을 모아 기르면서 지구 환경파괴로 야생상태에서 점차 멸종되는 동물의 보호와 종 보존, 번식 등에 대한 생태를 연구, 교육하며 이를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여 동물원이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2001년 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인 “하호²⁾”가 국내 최초로 동물원의 동물관리 실태에 대해 작성한 동물원 보고서인 「슬픈 동물원」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원의 대부분 동물들은 자신의 습성발현을 하지 못하고, 활동성 또한 보장 받지 못한 채 콘크리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생태적 조건이나 서식환경 역시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곳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동물원 동물들의 대표적인 비정상적 행동으로는 특정한 것에 집착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유인원, 코끼리, 호랑이, 사자 등과 같은 동물에서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동물원에서는 약 20여 년 전부터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은 동물원 동물들이 각자 습성에 따라서 생활

2) “하호”는 ‘하늘다람쥐에서 호랑이까지’의 약자로 동물에 관심이 많은 환경운동연합 동물복지회원들이 모여 2000년 5월에 만들어졌으며,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여 동물의 사회성과 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동물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2003년 8월 유인원사를 시작으로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원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예산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률적인 규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국내 동물원 관련 법률과 제도

우리나라의 동물 관련 법제는 「수의사법(1956년)」, 「가축전염병예방법(1961년)」, 「문화재보호법(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1962년)」, 「축산법(1963년)」,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1967년)」, 「자연환경보전법(1991년)」,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2002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2004년)」 등이 있다(김수진, 2004). 이러한 동물관련법제에 언급되고 있는 동물들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관리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동물에 대한 관리 및 생산에 치중되어 구체적인 법안과 제도는 마련되지 못 하였다(조경옥, 2008). 국내의 동물원 설립과 관련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인 또는 민간기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설립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생명을 다루고,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동물원을 공원, 박물관, 휴양지 및 문화시설로 취급하고 있으며, 동물원의 설립 및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 별도의 법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동물원 및 동물원의 동물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야생생물법」은 야생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서식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국내에서 ‘동물복지’의 개념을 처음 직접적으로 언급한 법률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등록제 도입(제5조)’,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제6조)’,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제7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제14조)’,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 감시관제의 도입(제19조)’ 등의 내용과 같이 반려동물, 실험동물의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원 및 동물원의 동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 해외 동물원 관련 법률과 제도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OECD 및 EU 가입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1991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반면,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물 복지에 관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해외의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1-1> 해외 동물복지 관련 법률

국가	Legislative Acts
호주	동물학대방지법(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36/1986 개정) 야생동물법(Wildelife Act, 1975) 동물연구규정(Animal Research Regulation, 1990)
벨기에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 1929)
캐나다	(UK)동물학대방지법(Cruelty to Animals Act, 1876/1970 개정)
덴마크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 1950)
영국 /웨일즈	동물학대방지법(Cruelty to Animals Act, 1876)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 동물공연규정법(Performing Animals Regulation Act, 1925) 동물영화촬영법(Cinematographic Films Animals Act, 1937) 위험한 야생동물법(Dangerous Wild Animals Act, 1976) 멸종위기종 수출입법(Endangered Species Import and Export Act, 1976)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Act, 1981) 동물원 면허법(Zoo Licensing Act, 1981)
독일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Act, 1972)
일본	동물보호와 조절관련 법(Law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Control of Animals, 1973) 전시를 위한 동물보관과 관리 관련 기준 등 공고문 No.7 (Standards relating to the Keeping and Custody of Animals for Exhibition, etc., Notification No. 7, 1976)
스웨덴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Act, 1944/1978 개정/1988 개정)
미국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66/1970 개정)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1972)

출처: 한국 동물원의 동물복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08), 조경욱, 건국대 수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해외 사례 가운데 영국과 EU는 개별법 형태로 동물원 관련 법률을 두고 있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에 동물원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유선봉, 2014). 영국의 경우에는 동물원과 관련하여 「동물원 면허법(Zoo Licensing Act)」이 1981년 제정되어 1984년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영국 내의 모든 동물원은 면허와 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23개 조문을 통해 동물원의 동물들이 각자의 습성에 따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동물원에 대해 「동물원 면허법」과 함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99년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동물원이 가지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동물 관리를 위한 최소 기준지침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 동물원 지침(Zoos Directive)은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EU 모든 소속 국가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해 종 보전, 교육, 동물복지기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을 2002년 4월 9일까지 회원국들이 동물원지침을 관련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잉글랜드는 「Zoo Licensing Act (Amendment)(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02」, 아일랜드 공화국은 「유럽공동체규정(European Communities (Licensing and Inspection of Zoos) Regulations 2003」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Law, 2001)」, 키프로스는 「동물원법(Law on Zoos, 2002)」, 독일은 「자연보존법(Federal Nature Conservation Act, 2002)」 등에서 해당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유선봉, 2014).

세계 각국 동물원들이 20세기 이후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단순한 동물의 전시 기능을 하는 곳에서 벗어나 교육과 종 보전으로, 그리고 동물복지 등으로 그 역할이 꾸준히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한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그 나라 동물이 어떻게 대우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과 같이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은 곧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연구 내용 및 구성

1) 대국민 인식 조사 실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국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1000명에게 동물원법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생태계와 동물에 대한 국민의 환경 공동체적 인식에 대해 확인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현 정부 동물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았다. 셋째, 동물 보호 수준 개선에 대한 의견 순위를 물어보았다. 넷째, 동물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다섯째,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후 시행 효과에 대한 예측을 알아보았으며, 여섯째, 동물원의 주요 사회 기능적 측면에 대한 국민 인식과 그 우선순위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각 계층이 생각하는 동물 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2) 미디어 분석

또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더불어 여론 주도층인 매스미디어에서는 동물원법과 동물복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보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미디어 분석에서는 먼저, 동물원법 제정 환경 조성을 위해 미디어에서는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변화를 보도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근 2년간 언론을 통해 노출된 주요 기사 선별 후 내용분석과 핵심 메시지 및 핵심 아이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미디어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주장을 확인하고, 둘째 제돌이 방류, 서울동물원 호랑이 참사, 거제씨월드 이슈에 대한 여론 변화에 대한 보도를 분석했으며 주요 이슈별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격적인 언론보도 분석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 네이버 검색을 통해 종합지, 경제지, 통신사 전문지의 관련 기사의 동물원법 보도현황, 주요 이슈에 대한 매체별 사실, 칼럼의 논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보도 분석의 추이를 보기 위한 전체 보도량 확인이 가능한 정량분석을 실시했으며, 둘째 이슈별 보도건수를 분석했다.

정성분석에서는 동물복지와 동물원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핵심 메시지를 분석했다. 또한 동물원법에 대한 보도 현황분석에서는 동물원법에 관한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했다. 이 밖에 동물복지 보도현황에 대해서도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메시지와 주요 보도내용을 분석해, 미디어가 동물원법 제정과 동물복지에 얼마만큼 관심을 보였는지를 평가하였다.

동물원법과 동물복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미디어 분석을 통해 동물권에 대국민 인식과 여론이 얼마나 호의적인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 더욱 활발한 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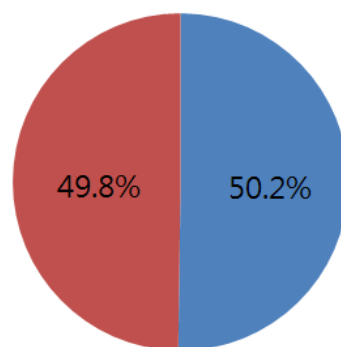
II. 대국민 인식 조사

1. 조사 분석 개요

전체 설문 40개의 문항 중 8개 문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들이었으며, 나머지 32개의 문항은 본 조사의 목적인 동물원법과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보다 현실성 있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물원에 대한 사전 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전체 응답자중 ‘최근 5년 사이에 동물원 혹은 수족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만을 선별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은 동물원 혹은 수족관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본 설문 응답자에서 제외하였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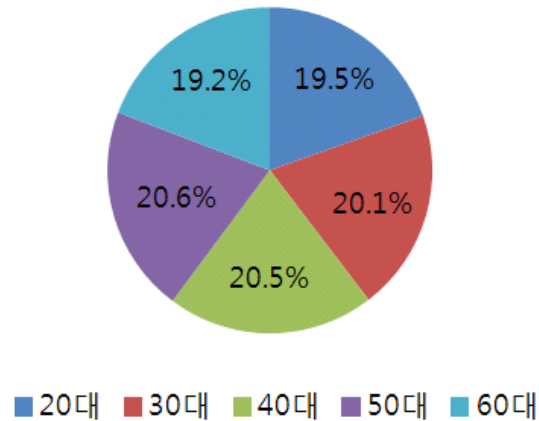
설문에는 전체 1095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남성은 550명(50.2%), 여성은 545명(49.8%)으로 성별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 남성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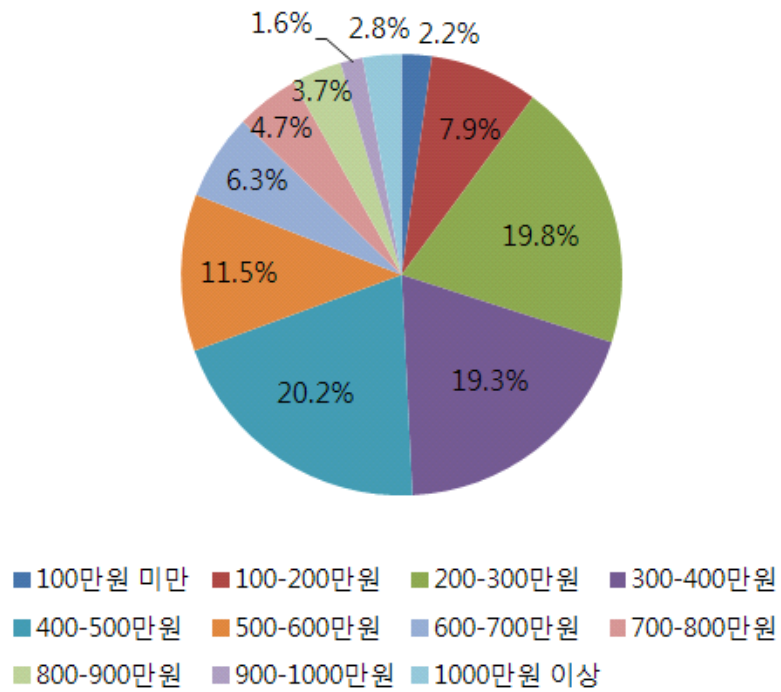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남자	550	50.2
여자	545	49.8
합계	1095	100.0

응답자의 연령대 또한 20대(20세부터 29세)부터 60대(60세부터 69세)까지 각각의 연령대에 약 210명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에는 빈도분석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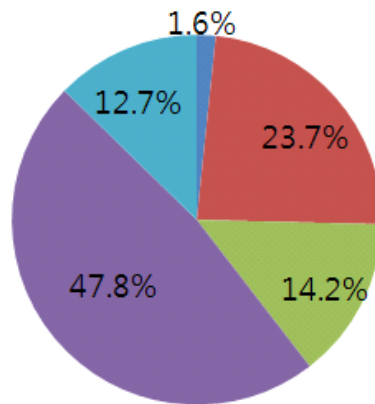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20대	214	19.5
30대	220	20.1
40대	225	20.5
50대	226	20.6
60대	210	19.2
합계	1095	100.0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은 월 100만원 미만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각 100만원 단위로 분류 된 집단 중 월 400~500만원의 소득을 가지는 집단이 221명(2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월소득 200~300만원 집단(19.8%), 그리고 월소득 300~400만원 집단(19.3%)이 뒤를 이었다.



구분	빈도	퍼센트
100만원 미만	24	2.2
100만원-200만원 미만	87	7.9
200만원-300만원 미만	217	19.8
300만원-400만원 미만	211	19.3
400만원-500만원 미만	221	20.2
500만원-600만원 미만	126	11.5
600만원-700만원 미만	69	6.3
700만원-800만원 미만	51	4.7
800만원-900만원 미만	40	3.7
900만원-1000만원 미만	18	1.6
1000만원 이상	31	2.8
합계	10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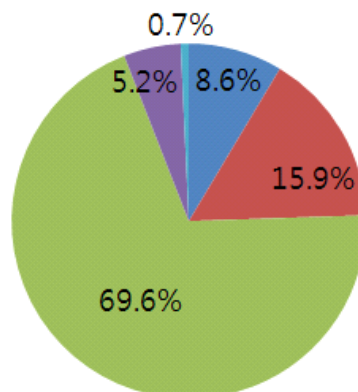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은 대학졸업자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47.8%)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자(23.7%), 전문대학 졸업자(14.2%) 응답자 순으로 분석되었다.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재학 이상

구분	빈도	퍼센트
중졸 이하	18	1.6
고졸	260	23.7
전문대졸	155	14.2
대졸	523	47.8
대학원재학/졸업 이상	139	12.7
합계	10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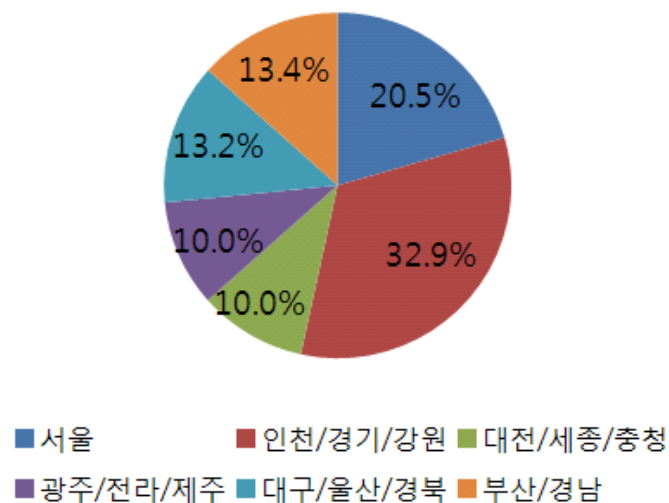
응답자들의 가구 형태는 2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69.6%로 가장 많았고, 부부만 거주하는 1세대 가구(15.9%)와 3세대 가구(5.2%)가 뒤를 이었다.



■ 1인 가구 ■ 1세대 가구 ■ 2세대 가구 ■ 3세대 가구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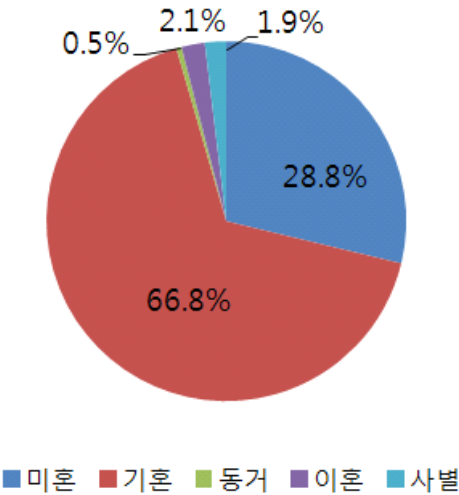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1인 가구	94	8.6
1세대 가구(부부만 거주)	174	15.9
2세대 가구(부모, 자녀)	762	69.6
3세대 가구(조부모 부양)	57	5.2
기타 유형	8	0.7
합계	1095	100.0

응답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가능한 전국인구분포 비율에 맞추고자 하였다. 인천/경기/강원에 거주하는 응답자(32.9%)가 가장 많았고, 서울(20.5%), 부산/경남 거주 응답자(13.4%)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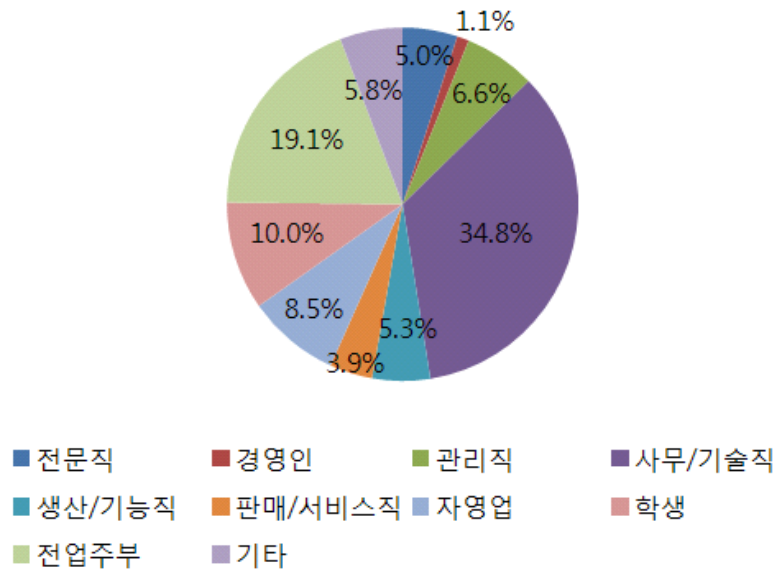
지역	빈도	퍼센트
서울	225	20.5
인천/경기/강원	360	32.9
대전/세종/충청	110	10.0
광주/전라/제주	109	10.0
대구/울산/경북	144	13.2
부산/경남	147	13.4
합계	1095	100.0

응답자들의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인 응답자들이 66.8%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미혼인 응답자들은 28.8%로 나타났다.



분류	빈도	퍼센트
미혼	315	28.8
기혼	731	66.8
동거	5	0.5
이혼	23	2.1
사별	21	1.9
합계	10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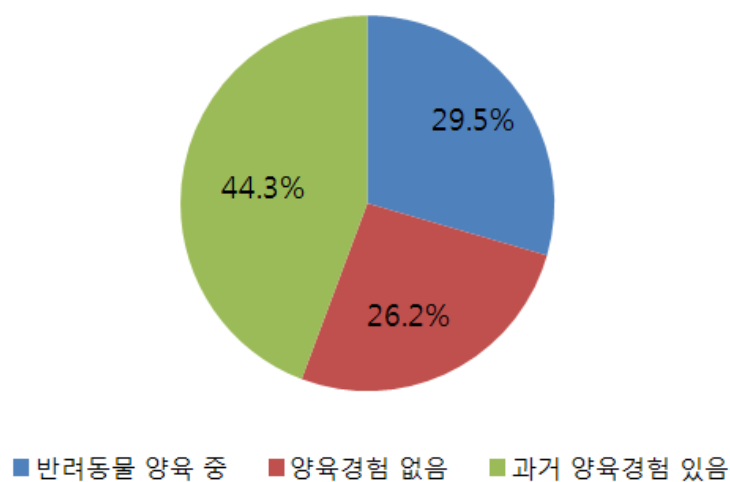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기술직(회사원/엔지니어/은행원/교사/6급 이하 공무원 등)이 가장 많았으며(34.8%), 두 번째로는 전업주부(부업을 하고 있는 주부 포함) 집단(19.1%), 뒤이어 학생(대학(원)생/박사과정) 집단(10.0%), 자영업(직원이 9인 이하인 기업 또는 대리점, 가게 등의 사장, 개인택시 운전자 등)집단(8.5%)의 분포를 보였다.



구분	빈도	퍼센트
전문직 (교수, 의사, 법조인, 회계사, 언론, 예술인등)	55	5.0
경영인 (대기업 이사 이상, 중소기업 사장 등)	12	1.1
관리직 (기업체 부장/팀장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등)	72	6.6
사무/기술직 (회사원, 엔지니어, 은행원, 교사, 6급 이하 공무원 등)	381	34.8
생산/기능직 (생산직단순, 기술근로자 및 단순기능직종사자 등)	58	5.3
판매/서비스직 (점원, 세일즈맨 등)	43	3.9
자영업 (9인 이하 기업/대리점 등의 사장, 개인택시운전자 등)	93	8.5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09	10.0
전업주부	209	19.1
기타	63	5.8
합계	1095	100.0

또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아니지만, 본 조사의 목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반려동물 양육, 및 양육 경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혹시 귀하의 가정에서는 반

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기르고 있거나 길러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의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 집단과 기르고 있지 않은 집단 그리고 양육해본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 과거에 길러본 경험이 있다는 집단이 가장 많았고(44.3%), 기르고 있다는 집단과(29.5%) 기르지 않는다는 집단이 뒤를 이었다(26.2%).



분류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기르고 있다	323	29.5
반려동물을 길러본 적 없다	287	26.2
과거에 길러 본 경험이 있다	485	44.3
합계	1095	100.0

3. 동물원법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동물원법과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최소값1 ~ 최대값5)로 구성되었다. 결과 분석은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그리고 교차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동물원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물 보호에 대해서 찬성하는 반응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1. 생태계와 동물에 대한 국민의 환경 공동체적 인식

생태계와 동물에 대한 국민의 환경 공동체적 인식을 묻는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 "동의하지 않는 편", 3 = "그저 그러함", 4 = "동의하는 편", 5 = "매우 동의함"). 문항조사결과, 모든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표 2-1> 생태계와 동물에 대한 환경 공동체적 인식 기술통계

세부 문항	평균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감정을 느낀다.	4.50
인간은 자연과 동물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4.48
동물의 삶을 파괴하면 인간도 피해를 입는다.	4.49
우리는 동식물과 최대한 공존해야한다.	4.50
생태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4.71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불편함은 견딜 수 있다.	4.27

3-2.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현 정부 동물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현 정부 동물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묻는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귀하께서는 동물학대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1 = "매우 반대", 2 = "반대하는 편", 3 = "그저 그러함", 4 = "찬성하는 편", 5 = "매우 찬성")이었으며, ‘우리나라 동물 보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1 = "매우 낮음", 2 = "낮은 편", 3 = "그저 그러함", 4 = "높은 편", 5 = "매우 높음")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조사결과, ‘귀하께서는 동물학대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는 4.32로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평균 2.26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국민들은 동물학대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원하며,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현 동물보호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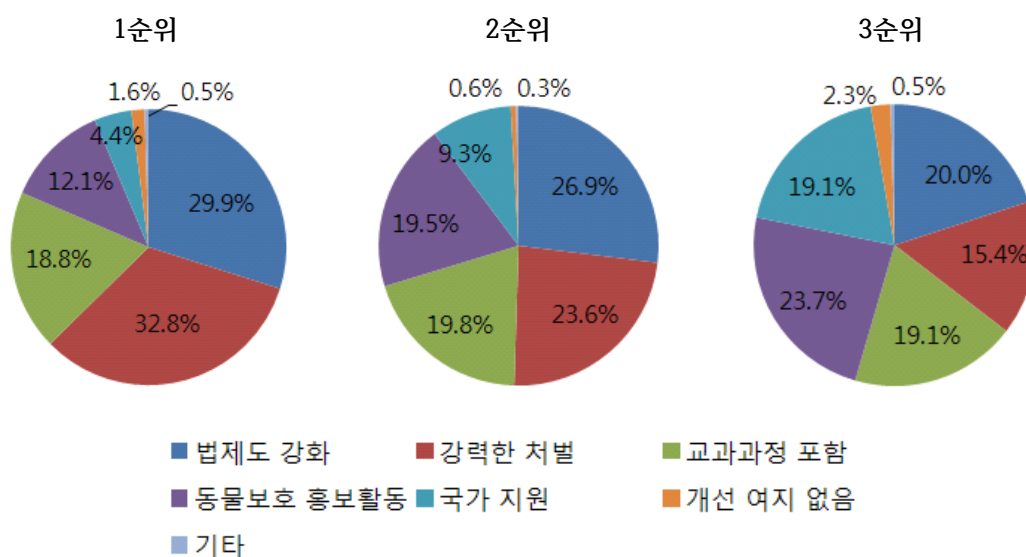
<표 2-2>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동물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기술통계

세부 문항	평균
귀하께서는 동물학대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2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6

3-3. 동물보호 수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동물 보호 수준 개선에 대한 구체적으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선택하여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문항의 보기는 7개의 명목 척도로 구성하였고, 세부 내용은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강화’,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 지원필요’,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 될 것 같지 않음’ 그리고 ‘기타 응답’이다. 본 조사에는 우선순위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2-3> 동물보호 수준 개선을 위한 필요 방안 1순위 ~ 3순위



세부 문항	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강화	327 (29.9)	295 (26.9)	219 (20.0)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	359 (32.8)	258 (23.6)	169 (15.4)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	206 (18.8)	217 (19.8)	209 (19.1)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	133 (12.1)	213 (19.5)	259 (23.7)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 지원필요	48 (4.4)	102 (9.3)	209 (19.1)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 될 것 같지 않음	17 (1.6)	7 (0.6)	25 (2.3)
기타	5 (0.5)	3 (0.3)	5 (0.5)
합계	1095(100.0)		

1순위의 경우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 문항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32.8%). 2순위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강화’ 문항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26.9%). 3순위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 문항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23.7%).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법 제도를 강화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및 규정 강화를 통해 동물보호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동물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동물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관련을 묻는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 "동의하지 않는 편", 3 = "그저 그러함", 4 = "동의하는 편", 5 = "매우 동의함"). 문항조사결과, 대부분의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공연 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 방법으로 훈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한다.’ 문항의 경우, 평균점수가 3.66으로 타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2-4> 동물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기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기술통계

세부 문항	평균
동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과 관리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4.42
공연 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 방법으로 훈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한다	3.66
사육 면적 등 일정기준에 못 미치는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해야한다	4.31
사육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한다	4.48
사육중인 동물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동물 전문의사의 도움)를 취해야한다	4.50
동물의 사육 및 관리는 전문 사육사 등 자격이 인정된 자가 수행하여야한다	4.42
사육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은 '사육부적합동물'로 지정해 사육을 금지해야한다	4.32
동물원은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한다	4.58
동물원은 야생동물생태, 종 복원, 서식지보전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한다	4.26

3-5.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후 시행 효과에 대한 예측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후 시행 효과에 대한 예측을 묻는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 '귀하께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원법 (위 질문 내용)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1 = "매우 반대", 2 = "반대하는 편", 3 = "그저 그러함", 4 = "찬성하는 편", 5 = "매우 찬성")이었으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동물원법이 제정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들의 복지와 환경이 개선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1 =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2 =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 3 = "그저 그러함", 4 = "대체로 개선될 것", 5 = "매우 개선될 것")이었으며, '국내에도 동물원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1 = "전혀 필요 없다", 2 =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3 = "보통이다", 4 = "필요한 편이다", 5 = "매우 필요하다")로 구성되었다. 문항조사결과, 모든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3.8점 이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표 2-5>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후 시행 효과 예측에 대한 기술통계

세부 문항	평균
귀하께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원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4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동물원법이 제정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들의 복지와 환경이 개선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82
국내에도 동물원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6

3-6. 동물원의 주요 사회 기능적 측면에 대한 국민 인식과 그 우선순위

동물원의 주요 사회 기능적 측면에 대한 국민 인식과 그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교육 시설로서의 기능’,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멸종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 ‘오락 시설로서의 기능’에 대한 응답은(1 =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 “중요하지 않은 편”, 3 = “그저 그러함”, 4 = “중요한 편”, 5 = “매우 중요함”)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시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멸종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멸종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 “동의하지 않는 편”, 3 = “그저 그러함”, 4 = “동의하는 편”, 5 = “매우 동의함”)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응답자들은 대체로 동물원의 기능에 대해서 ‘멸종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평균 4.18점), 또한 이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평균 4.28점).

<표 2-6> 동물원의 주요 사회 기능적 측면에 대한 국민인식 기술통계

세부 문항	평균
교육 시설로서의 기능	3.92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3.85
멸종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	4.18
오락 시설로서의 기능	3.22
교육 시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3.68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우선시되어야한다	3.81
멸종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이 우선시되어야한다	4.28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되어야한다	2.83

4. 각 계층이 생각하는 동물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4-1. 동물원법 및 동물복지 관련 찬반 의견에 대한 빈도분석

국민들이 동물원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응답한 각 문항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견의 대비 정도를 명확히 비교해 보기 위해 앞서 응답자들이 응답한 의견 가운데 반대 및 부정적 의견과 중립(보통)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음’, ‘낮음’, ‘반대함’, ‘개선되지 않을 것’, ‘중요하지 않음’으로 분류하고,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은 ‘동의함’, ‘높다’, ‘찬성함’, ‘개선될 것’, ‘중요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립적 의견을 반대 및 부정적 의견으로 포함한 것은 중립 및 보통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동물원법이나 동물복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동물원법 제정에 관한 기사를 제공하여 읽은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관심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하여 부정 및 반대 의견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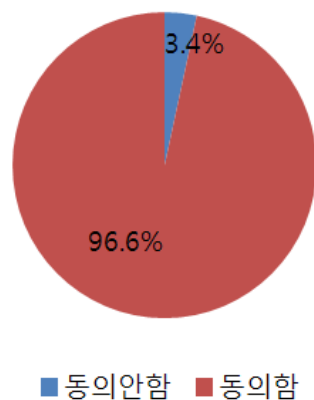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동물원법과 동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는 전 집단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 범국민적으로 동물원 및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법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가 사

회 각계 계층에 전반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2-7> 자연 및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응답자 의견

문항	빈도(%)		
	동의함	동의안함	합계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감정을 느낀다	1058 (96.6)	37 (3.4)	1095 (100)
인간은 자연과 동물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1057 (96.5)	38 (3.5)	
동물의 삶을 파괴하면 인간도 피해를 입는다	1044 (95.3)	51 (4.7)	
우리는 동식물과 최대한 공존해야 한다	1046 (95.5)	49 (4.5)	
생태계가 없으면 우리는 살수가 없다	1068 (97.5)	27 (2.5)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불편함은 견딜 수 있다	1006 (91.9)	89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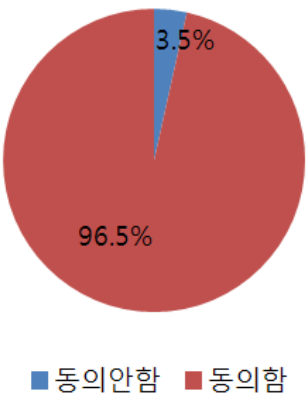
각 문항에 대해 살펴보면,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감정을 느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 한다 및 그저 그렇다’의 의견이 3.4%, ‘동의 한다’가 96.6%로 강한 찬성의 비율을 나타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의 복지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감정을 느낀다’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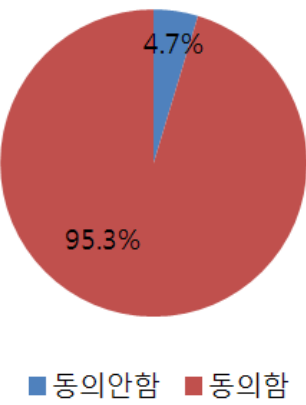
‘인간은 자연과 동물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 한다

다와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3.5%, ‘동의 한다’는 의견이 96.5%로 강한 찬성의 비율을 나타내 자연과 동물보호에 대해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인간은 자연과 동물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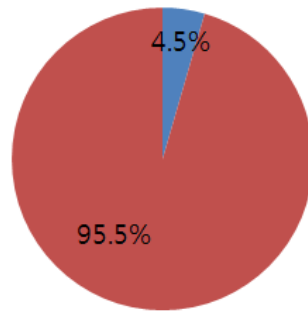
‘동물의 삶을 파괴하면 인간도 피해를 입는다.’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4.7%, ‘동의 한다’가 95.3%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동물의 삶과 인간이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그림 2-3> ‘동물의 삶을 파괴하면 인간도 피해를 입는다’에 대한 의견

‘우리는 동식물과 최대한 공존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은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에 4.5%만 응답하였으며, ‘동의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5.5%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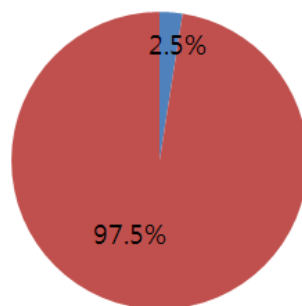
나타났다. 이는 인간이 동식물 등 자연을 훼손하거나 단순히 이용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공존해야 할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동의안함 ■ 동의함

<그림 2-4> ‘우리는 동식물과 최대한 공존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생태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 안한다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으며, ‘동의 한다’가 98%로 매우 강한 찬성의 비율을 보였다. 앞선 문항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 역시 생태계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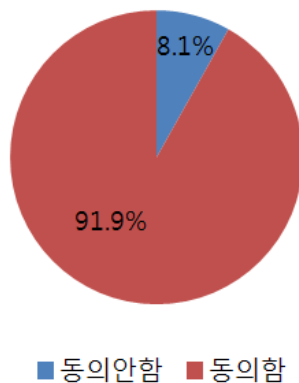


■ 동의안함 ■ 동의함

<그림 2-5> ‘생태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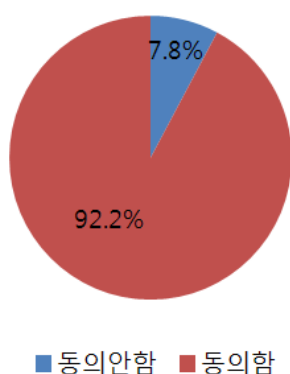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불편함은 견딜 수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8%, ‘동의 한다’가 92%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이 생태계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6>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불편함은 견딜 수 있다’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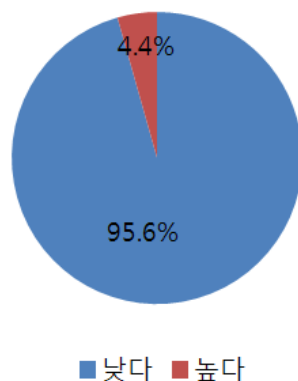
다음으로 응답자들에게 ‘동물학대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 가운데 ‘동의 안 한다 혹은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7.8%에 불과했고, ‘동의 한다’는 의견은 92.2%로 나타나 벌칙부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7> ‘동물학대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응답은 ‘낮다 및 그저 그렇다’가 95.6%, ‘높다’가 4.4%로, 응답자들은 현재 동물보호의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낮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그림 2-8>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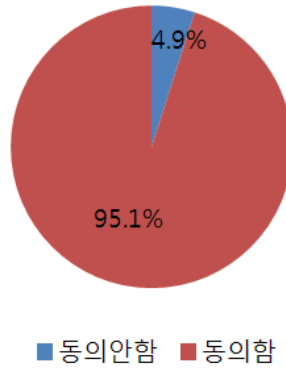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원법 제정 발의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원법 발의와 관련된 기사를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총 9개로 구성되었다. 세부 문항은 ‘동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과 관리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연 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 방법으로 훈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사육면적 등 일정기준에 못 미치는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사육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사육 중인 동물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동물 전문 의사의 도움)를 취해야 한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는 전문 사육사 등 자격이 인정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사육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은 ‘사육 부적합 동물’로 지정해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 ‘동물원은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동물원은 야생동물 생태, 종복원,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에서 응답자들은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원법 제정 발의 개요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 및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였다(아래 <표 2-8> 참조).

<표 2-8> 동물원법 제정 발의 내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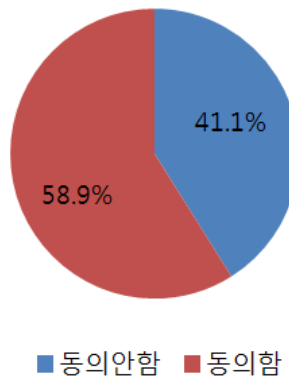
문항	빈도(%)		
	동의함	동의안함	합계
동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과 관리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41 (95.1)	54 (4.9)	1095 (100)
공연 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 방법으로 훈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645 (58.9)	450 (41.1)	
사육면적 등 일정기준에 못 미치는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996 (91.0)	99 (9.0)	
사육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994 (90.8)	101 (9.2)	
사육 중인 동물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동물 전문 의사의 도움)를 취해야 한다	1042 (95.2)	53 (4.8)	
동물의 사육 및 관리는 전문사육사 등 자격이 인정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011 (92.3)	84 (7.7)	
사육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은 ‘사육 부적합 동물’로 지정해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	990 (90.4)	105 (9.6)	
동물원은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1044 (95.3)	51 (4.7)	
동물원은 야생동물 생태, 종 복원,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954 (87.1)	141 (12.9)	

각 문항에 대해 살펴보면 ‘동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과 관리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4.9%, ‘동의 한다’가 95.1%로 정부의 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찬성하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동물원 설립 시 정부 허가에 관한 의견

‘공연 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 방법으로 훈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41.1%, ‘동의 한다’가 58.9%로 다른 문항과 비교했을 때, 다소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의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림 2-10> 공연 등을 위한 동물의 인위적 훈련 행위 금지에 대한 의견

다른 문항과는 달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보통(그저 그렇다)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문항에서는 ‘동의 한다’는 의견이 모두 90%를 상회하면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공연을 위한 동물의 인위적 훈련’에 대해서는 58.9% 수준으로 동의의 정도가 매우 낮아졌다. 이는 보통 및 중립 의견인 ‘그저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 본 분석에서는 ‘잘 모르거나’

혹은 ‘관심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보류하는 ‘그저 그러함’에 대한 응답 비중이 낮았으나, 본 문항은 비교적 중립적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어 중립적 의견 혹은 의견을 보류하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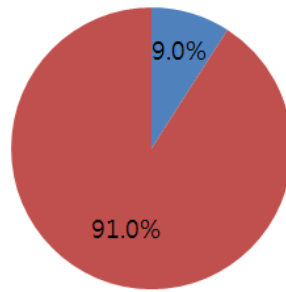
응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문항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명으로 전체의 0.6%,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104명으로 9.5% 수준이었다. 즉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응답자는 전체의 10.1% 수준이었다. 그러나 다른 문항과 비교해 ‘그저 그러함’에 대한 응답 비중이 31%로 매우 높아 ‘의견 제시를 보류’한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9> ‘공연 등을 위한 동물의 인위적 훈련 행위 금지’에 대한 세부 의견

구분	빈도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0.6
동의하지 않음	104	9.5
그저 그러함	339	31.0
동의함	452	41.3
매우 동의함	193	17.6
합계	1095	100.0

따라서 응답자들은 단순히 ‘공연을 위한 인위적 훈련 행위’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 및 동물학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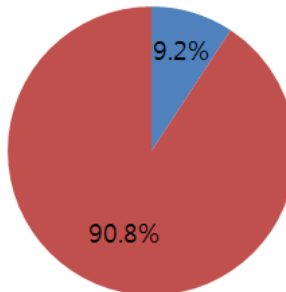
위의 문항에 대한 분석은 아래 ‘사육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와 연결하여 평가해 볼만하다.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9.0%, ‘동의 한다’는 의견이 91.0%로 나타나 앞선 문항인 ‘인위적 훈련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육 편의를 위하여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을 사용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동의안함 ■ 동의함

<그림 2-11> 사육의 편의를 위해 전기충격기, 채찍 등의 사용 금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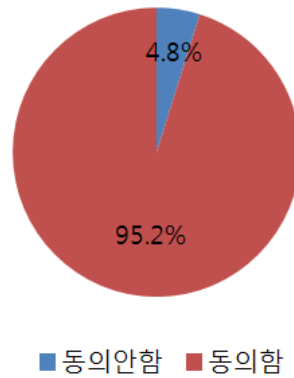
‘사육면적 등 일정기준에 못 미치는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9.2%, ‘동의 한다’가 90.8%로 강한 찬성의 비율을 보여 앞선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것에 동의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동의안함 ■ 동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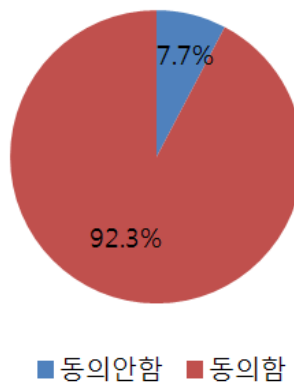
<그림 2-12> 기준 미달의 사육환경에서의 사육행위 금지에 대한 의견

‘사육 중인 동물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동물 전문의사의 도움)를 취해야 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4.8%, ‘동의 한다’가 95.2%로 나타나 동물의 복지를 위한 동물원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13>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전문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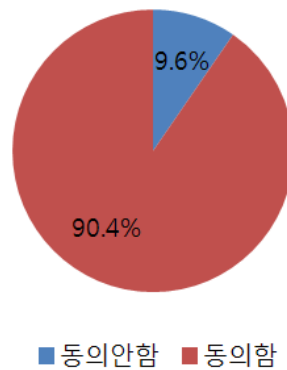
‘동물의 사육 및 관리는 전문사육사 등 자격이 인정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7.7%, ‘동의 한다’가 92.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자격인에 대한 인증과 관리가 필요하며, 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14> 동물의 사육·관리는 전문 자격이 인증된 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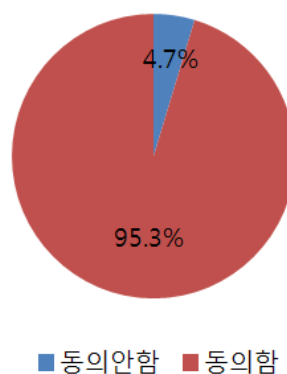
‘사육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은 ‘사육 부적합 동물’로 지정해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9.6%, ‘동의 한다’가 90.4%로 나타나 멸종위기종 등의 이유로 인한 사육 부적합 동물에 대한 특수 보호 및 사육금지조치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림 2-15> 사육 부적합 동물의 사육금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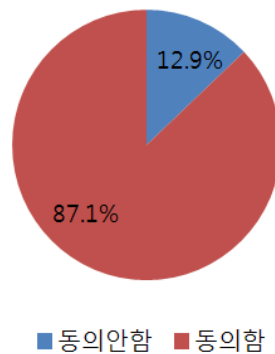
'동물원은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4.7%, '동의 한다'가 95.3%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서울동물원 호랑이 사육사 공격 사건을 비롯해 동물들의 탈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안전시설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6> 관람객 안전 보장 시설 의무화에 대한 의견

'동물원은 야생동물 생태, 종 복원,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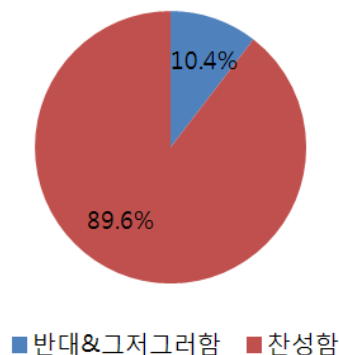
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 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4.7%, ‘동의 한다’가 95.3%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동물원이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태, 종 복원, 서식지 보전 등과 같은 공존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7> 동물원의 야생동물 생태, 종복원,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연구 수행에 대한 의견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동물원법 제정’에 대해 981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도 284명으로 전체의 25.9%로 조사되었다. 반면, ‘매우 반대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없었고, ‘반대하는 편’으로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13명으로 1.2% 수준에 불과했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해 의견 제시를 보류한 응답자는 101명으로 9.2%였다.

<표 2-10>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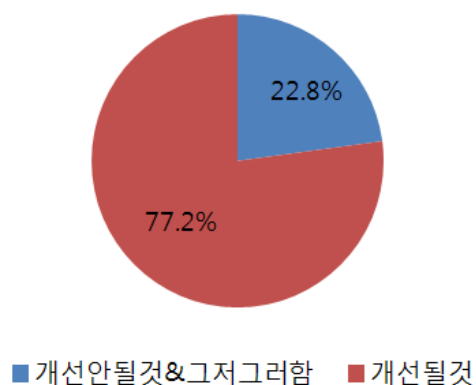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반대하는 편	13	1.2
그저 그러함	101	9.2
찬성하는 편	697	63.7
매우 찬성	284	25.9
합계	1095	100.0

동물원법 제정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동물원법이 제정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들의 복지와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의견을 물었다. 해당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1,095명 가운데 250명인 22.8%가 ‘개선이 안 될 것이다 및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동물원법 제정을 통해 동물복지가 ‘개선될 것이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77.2%로 나타났다.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그저 그렇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3명(0.3%),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37명(3.4%) 수준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해 정확한 의견 판단을 보류한 응답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동물원법이 제정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긍정적인 사례를 통하여 의견 판단을 보류한 응답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동물원법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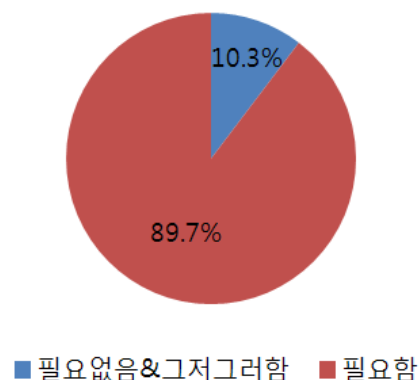
<표 2-11> 동물원법 제정을 통한 개선 여부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퍼센트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3	0.3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	37	3.4
그저 그러함	210	19.2
대체로 개선될 것	746	68.1
매우 개선될 것	99	9.0
합계	1095	100.0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원을 별도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동물원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특별한 별도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내에도 동물원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필요 없다고 의견을 밝혔거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3% 수준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인 89.7%가 별도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동물원이나 수족관과 같이 생명체를 관리하는 특수한 곳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별도로 제정된 법안에 따라 법률적 차원의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2> 국내에서의 동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퍼센트
별로 필요 없을 것	6	0.5
그저 그러함	107	9.8
필요한 편	688	62.8
매우 필요함	294	26.8
합계	10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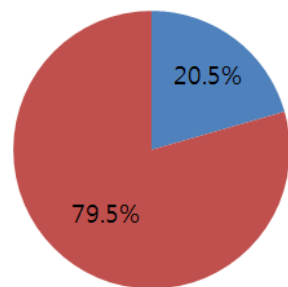
동물원은 전통적으로 동물 전시를 통한 여가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훼손에 따른 멸종 위기 종 동식물의 증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과의 공존, 동물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원에 요구되는 기능에 대해서도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국민들은 동물원의 기능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해 4개 문항을 통해 질문을 하였다. 질문은 ‘교육시설로서의 기능’,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멸종 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멸종 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의 기능을 동물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에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은 39.8% 응답자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과거의 전통적 동물원의 기능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물원이 단순히 동물을 전시해 구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보다 자연, 동식물과의 공존과 같이 보다 높은 차원의 관점에서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3> 동물원의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

문항	빈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합계
교육시설로서의 기능	870 (79.5)	225 (20.5)	1095 (100)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773 (70.6)	322 (29.4)	
멸종 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	905 (82.6)	190 (17.4)	
오락시설로서의 기능	436 (39.8)	659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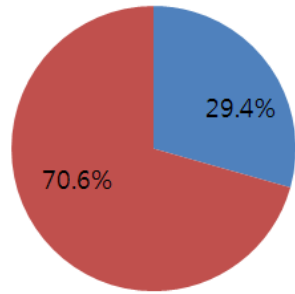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교육 시설로서의 기능’ 문항에 대한 응답은 ‘중요하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가 20.5%, ‘중요하다’가 79.5%로 응답자들은 동물원에 대해 교육 시설로서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물원 관람에 대해서도 단순한 여가나 오락의 공간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원은 교육시설로서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하지않음 ■중요함

<그림 2-17>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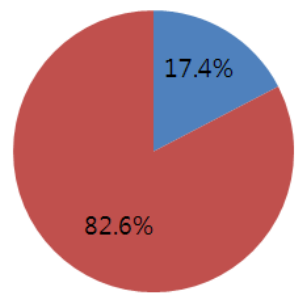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문항에 대한 응답은 ‘중요하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가 29.4%, ‘중요하다’가 70.6%로 응답자들은 동물원에 대한 생태 과학적 연구의 기능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29.4%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으로 전체의 0.4%,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48명(4.4%)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4.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그저 그러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70명으로 2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물원이 동물 생태 전체에 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비교적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요하지않음 ■ 중요함

<그림 2-18>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기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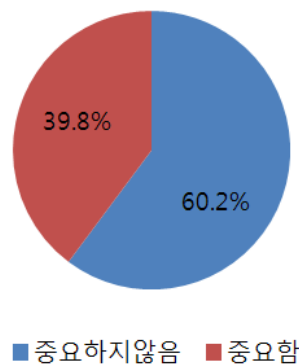
‘멸종 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중요하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가 17.4%, ‘중요하다’가 82.6%로 설문에서 측정한 동물원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능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명(0.6%),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2명(2.0%)으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61명으로 전체의 14.7% 수준인 반면,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은 477명(43.6%),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428명(39.1%)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항과 비교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해당 기능에 대하여 동물원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능이며, 앞으로 점차 강화되어야 할 기능으로 판단된다.



■ 중요하지않음 ■ 중요함

<그림 2-19> 멸종 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 기능에 대한 인식

‘오락시설로서의 기능’ 문항에 대한 응답은 ‘중요하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가 60.2%, ‘중요하다’가 39.8%로 응답자들은 과반 수 이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볼 때, 동물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단순한 오락 시설로서가 아닌 다른 사회 기능적 측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물원의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5명(4.1%)이었고,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47명(4.3%)으로 나타나 다른 기능에 대한 인식과 달리 여가시설로서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389명으로 전체의 35.5%였으나, 그저 그렇다고 중립 혹은 평가 보류 응답자가 467명으로 전체의 4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기존 동물원의 주요 기능이었던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이 여러 주변 요인에 따라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물원은 지금까지의 오락, 여가 시설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보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능이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2-20>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는 동물원의 주된 기능과 동물복지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은 앞선 동물원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세부 문항은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멸종 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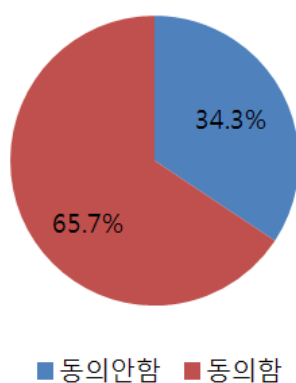
동물원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앞선 동물원의 주요 기능에 대한 질문의 결과에서 나타난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르면 ‘동물 종 보존 기능’이 88.7%로 최우선순위로 평가받고 있

으며, 다음으로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기능’과 ‘교육시설로서의 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은 23.7% 응답자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기능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2-14> 동물원의 주요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문항	빈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합계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719 (65.7)	376 (34.3)	1095 (100)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768 (70.1)	327 (29.9)	
멸종 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종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971 (88.7)	124 (11.3)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59 (23.7)	836 (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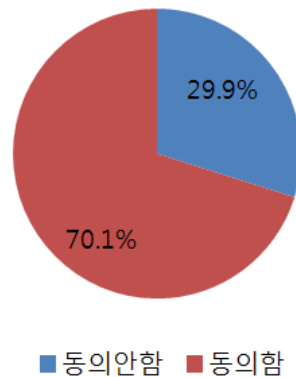
각 기능의 우선순위 평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육 시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안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34.3%, ‘동의한다’가 65.7%로 과반 수 이상이 동물원의 교육적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2-21>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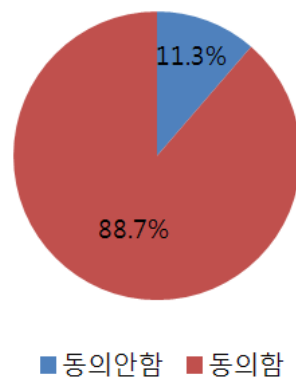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동의 안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29.9%, ‘동의 한다’가 70.1%로 나타나 연구 기관으로

서의 역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 동물 생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멸종 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중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동의 안한다/ 그저 그렇다’가 11.3%, ‘동의 한다’가 88.7%로 대부분이 동의하는 답변을 나타내 종 보존에 대한 사회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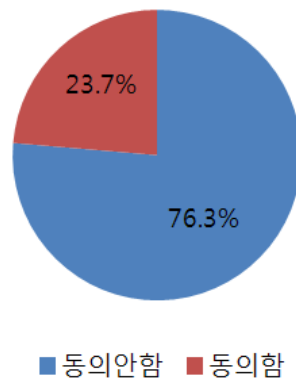


<그림 2-23> 동물 종 보존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멸종 위기 종을 비롯한 동물 중 보호나 동물 생태에 관한 연구 기능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동물, 생태계 보호,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자연과 생태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의 인식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번 설문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앞선 3개의 기능에 대한 평가와 달리 ‘오락 시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

어야 한다’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동의 안한다와 그저 그렇다’가 76.3%, ‘동의 한다’가 23.7%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나타냈다. 이는 동물원의 전통적 기능인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이 더 이상 핵심 기능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 연구시설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24> 오락시설로서의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4-2. 교차분석

(1) 교차분석 개요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지역,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결혼 여부, 세대 형태)과 반려동물 양육 및 양육 경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반영해 세분화된 집단별 의견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차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조건을 비슷한 집단 간 축약해서 나타내었다. (직업군 - 전문직/경영직/관리직, 생산/기능직/판매/서비스직/자영업, 사무/기능직, 학생, 전업주부 집단), (소득기준 - 전체 소득 응답자의 중위수 월 400만원을 기준으로 4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집단), (결혼여부 - 전체 1095명중 동거, 이혼, 사별 집단을 제외. 본 변인간의 관계에 한해서만 총 49명이 제외되어 1046명으로 추정함), 그 외에 집단들은 축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2-15> 교차분석에 활용된 문항의 항목 번호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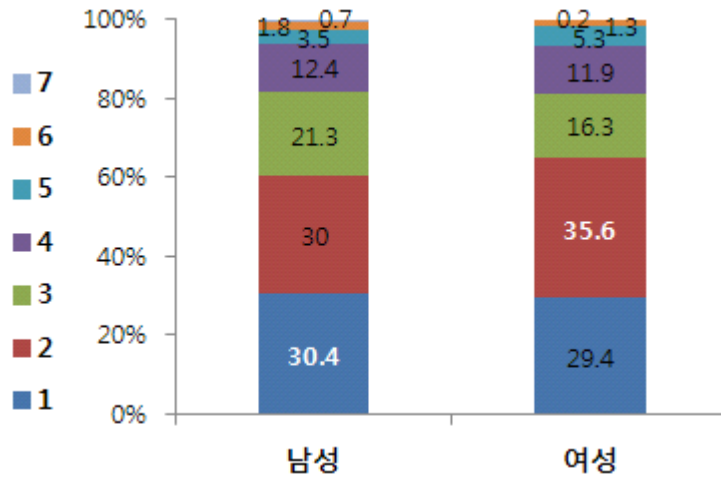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번호별 내용
1)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
2)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
3)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
4)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
5)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 지원필요
6)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 될 것 같지 않음
7) 기타

(2) 성별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교차 분석의 결과, 남성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에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로 중복된 응답을 하였으며, 3순위로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여성의 경우 1순위에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 2순위에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 3순위에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2-16> 성별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 방안

구분			1	2	3	4	5	6	7	전체
1순위	남성	빈도	167	165	117	68	19	10	4	550
		퍼센트	30.4%	30.0%	21.3%	12.4%	3.5%	1.8%	.7%	100%
	여성	빈도	160	194	89	65	29	7	1	545
		퍼센트	29.4%	35.6%	16.3%	11.9%	5.3%	1.3%	.2%	100%
	전체	빈도	327	359	206	133	48	17	5	1095
		퍼센트	29.9%	32.8%	18.8%	12.1%	4.4%	1.6%	.5%	100%
2순위	남성	빈도	141	119	119	117	52	1	1	550
		퍼센트	25.6%	21.6%	21.6%	21.3%	9.5%	.2%	.2%	100%
	여성	빈도	154	139	98	96	50	6	2	545
		퍼센트	28.3%	25.5%	18.0%	17.6%	9.2%	1.1%	.4%	100%
	전체	빈도	295	258	217	213	102	7	3	1095
		퍼센트	26.9%	23.6%	19.8%	19.5%	9.3%	.6%	.3%	100%
3순위	남성	빈도	113	87	105	130	98	13	4	550
		퍼센트	20.5%	15.8%	19.1%	23.6%	17.8%	2.4%	.7%	100%
	여성	빈도	106	82	104	129	111	12	1	545
		퍼센트	19.4%	15.0%	19.1%	23.7%	20.4%	2.2%	.2%	100%
	전체	빈도	219	169	209	259	209	25	5	1095
		퍼센트	20.0%	15.4%	19.1%	23.7%	19.1%	2.3%	.5%	100%



<그림 2-25> 성별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3) 거주지역

응답자의 지역에 따른 교차 분석의 결과, 서울, 인천/경기/강원, 광주/전라/제주의 경우 경 1순위에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꼽았으며, 대전/세종/충청, 대구/울산/경북, 부산/경남의 경우 1순위에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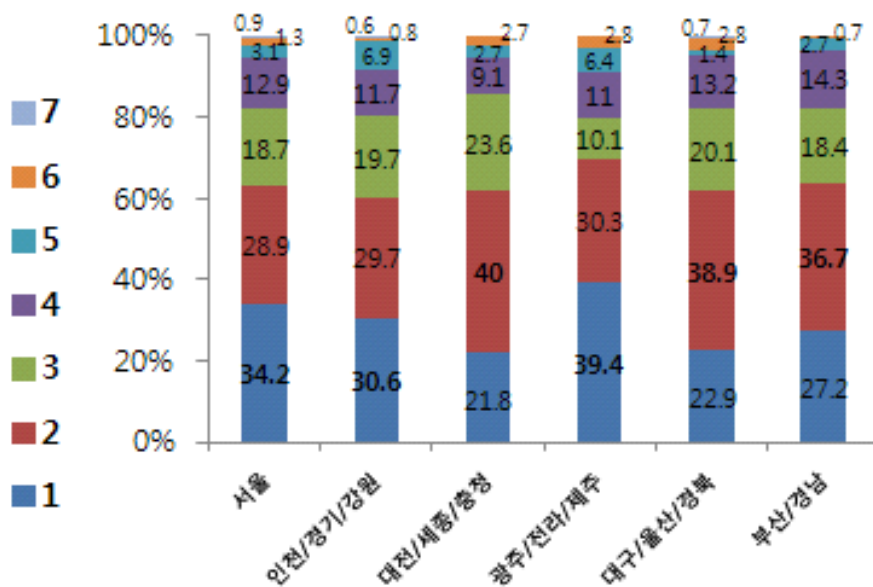
서울, 대전/세종/충청, 대구/울산/경북, 부산/경남은 2순위에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선택하였고, 광주/전라/제주는 2순위로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을 꼽았으며, 인천/경기/강원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와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에 대해 같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마지막 3순위로는 서울,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제주, 부산/경남 지역 응답자가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필요’로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인천/경기/강원은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 지원필요’를 꼽았고, 대구/울산/경북 권 응답자는 다시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강하게 주장했다.

<표 2-17> 거주지역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 방안

구분		1	2	3	4	5	6	7	전체
1순위	서울	77	65	42	29	7	3	2	225
		34.2%	28.9%	18.7%	12.9%	3.1%	1.3%	.9%	100%
	인천/경기 /강원	110	107	71	42	25	3	2	360
		30.6%	29.7%	19.7%	11.7%	6.9%	.8%	.6%	100%
	대전/세종 /충청	24	44	26	10	3	3	0	110
		21.8%	40.0%	23.6%	9.1%	2.7%	2.7%	.0%	100%
	광주/전라 /제주	43	33	11	12	7	3	0	109
		39.4%	30.3%	10.1%	11.0%	6.4%	2.8%	.0%	100%
	대구/울산 /경북	33	56	29	19	2	4	1	144
		22.9%	38.9%	20.1%	13.2%	1.4%	2.8%	.7%	100%
	부산/경남	40	54	27	21	4	1	0	147
		27.2%	36.7%	18.4%	14.3%	2.7%	.7%	.0%	100%
	전체	327	359	206	133	48	17	5	1095
		29.9%	32.8%	18.8%	12.1%	4.4%	1.6%	.5%	100%
2순위	서울	58	54	51	38	22	2	0	225
		25.8%	24.0%	22.7%	16.9%	9.8%	.9%	.0%	100%
	인천/경기 /강원	101	101	64	65	26	2	1	360
		28.1%	28.1%	17.8%	18.1%	7.2%	.6%	.3%	100%
	대전/세종 /충청	31	23	17	25	13	0	1	110
		28.2%	20.9%	15.5%	22.7%	11.8%	.0%	.9%	100%
	광주/전라 /제주	26	21	29	24	9	0	0	109
		23.9%	19.3%	26.6%	22.0%	8.3%	.0%	.0%	100%
	대구/울산 /경북	38	24	30	32	18	1	1	144
		26.4%	16.7%	20.8%	22.2%	12.5%	.7%	.7%	100%
	부산/경남	41	35	26	29	14	2	0	147
		27.9%	23.8%	17.7%	19.7%	9.5%	1.4%	.0%	100%
	전체	295	258	217	213	102	7	3	1095
		26.9%	23.6%	19.8%	19.5%	9.3%	.6%	.3%	100%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구분		1	2	3	4	5	6	7	전체
3순위	서울	44	42	44	55	34	6	0	225
		19.6%	18.7%	19.6%	24.4%	15.1%	2.7%	.0%	100%
	인천/경기 /강원	68	53	69	76	84	10	0	360
		18.9%	14.7%	19.2%	21.1%	23.3%	2.8%	.0%	100%
	대전/세종 /충청	24	13	22	28	20	2	1	110
		21.8%	11.8%	20.0%	25.5%	18.2%	1.8%	.9%	100%
	광주/전라 /제주	17	22	23	28	16	2	1	109
		15.6%	20.2%	21.1%	25.7%	14.7%	1.8%	.9%	100%
	대구/울산 /경북	35	22	26	34	24	1	2	144
		24.3%	15.3%	18.1%	23.6%	16.7%	.7%	1.4%	100%
	부산/경남	31	17	25	38	31	4	1	147
		21.1%	11.6%	17.0%	25.9%	21.1%	2.7%	.7%	100%
	전체	219	169	209	259	209	25	5	1095
		20.0%	15.4%	19.1%	23.7%	19.1%	2.3%	.5%	100%



<그림 2-26> 거주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4)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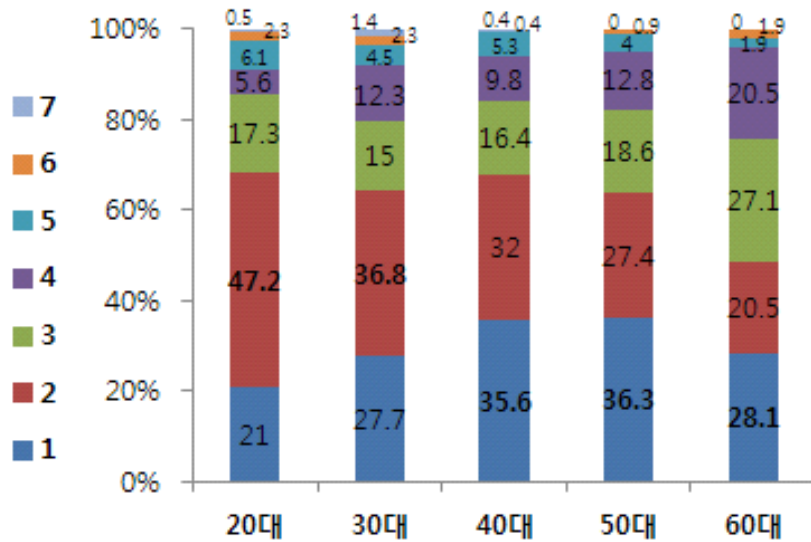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교차 분석의 결과, 1순위에는 20대와 30대가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꼽았으며, 40대, 50대, 60대가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순위에는 20대, 30대, 40대가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50대는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60대는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꼽았다. 3순위로는 20대, 40대, 50대가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30대는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동일한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60대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와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동일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표 2-18> 연령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구분		1	2	3	4	5	6	7	전체
1순위	20대	45	101	37	12	13	5	1	214
		21.0%	47.2%	17.3%	5.6%	6.1%	2.3%	.5%	100%
	30대	61	81	33	27	10	5	3	220
		27.7%	36.8%	15.0%	12.3%	4.5%	2.3%	1.4%	100%
	40대	80	72	37	22	12	1	1	225
		35.6%	32.0%	16.4%	9.8%	5.3%	.4%	.4%	100%
	50대	82	62	42	29	9	2	0	226
		36.3%	27.4%	18.6%	12.8%	4.0%	.9%	.0%	100%
	60대	59	43	57	43	4	4	0	210
		28.1%	20.5%	27.1%	20.5%	1.9%	1.9%	.0%	100%
	전체	327	359	206	133	48	17	5	1095
		29.9%	32.8%	18.8%	12.1%	4.4%	1.6%	.5%	100%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구분		1	2	3	4	5	6	7	전체
2순위	20대	58	54	51	38	22	2	0	214
		25.8%	24.0%	22.7%	16.9%	9.8%	.9%	.0%	100%
	30대	101	101	64	65	26	2	1	220
		28.1%	28.1%	17.8%	18.1%	7.2%	.6%	.3%	100%
	40대	31	23	17	25	13	0	1	225
		28.2%	20.9%	15.5%	22.7%	11.8%	.0%	.9%	100%
	50대	26	21	29	24	9	0	0	226
		23.9%	19.3%	26.6%	22.0%	8.3%	.0%	.0%	100%
	60대	38	24	30	32	18	1	1	210
		26.4%	16.7%	20.8%	22.2%	12.5%	.7%	.7%	100%
	전체	295	258	217	213	102	7	3	1095
		26.9%	23.6%	19.8%	19.5%	9.3%	.6%	.3%	100%
3순위	20대	44	42	44	55	34	6	0	214
		19.6%	18.7%	19.6%	24.4%	15.1%	2.7%	.0%	100%
	30대	68	53	69	76	84	10	0	220
		18.9%	14.7%	19.2%	21.1%	23.3%	2.8%	.0%	100%
	40대	24	13	22	28	20	2	1	225
		21.8%	11.8%	20.0%	25.5%	18.2%	1.8%	.9%	100%
	50대	17	22	23	28	16	2	1	226
		15.6%	20.2%	21.1%	25.7%	14.7%	1.8%	.9%	100%
	60대	35	22	26	34	24	1	2	210
		24.3%	15.3%	18.1%	23.6%	16.7%	.7%	1.4%	100%
	전체	219	169	209	259	209	25	5	1095
		20.0%	15.4%	19.1%	23.7%	19.1%	2.3%	.5%	100%



<그림 2-27> 연령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5) 직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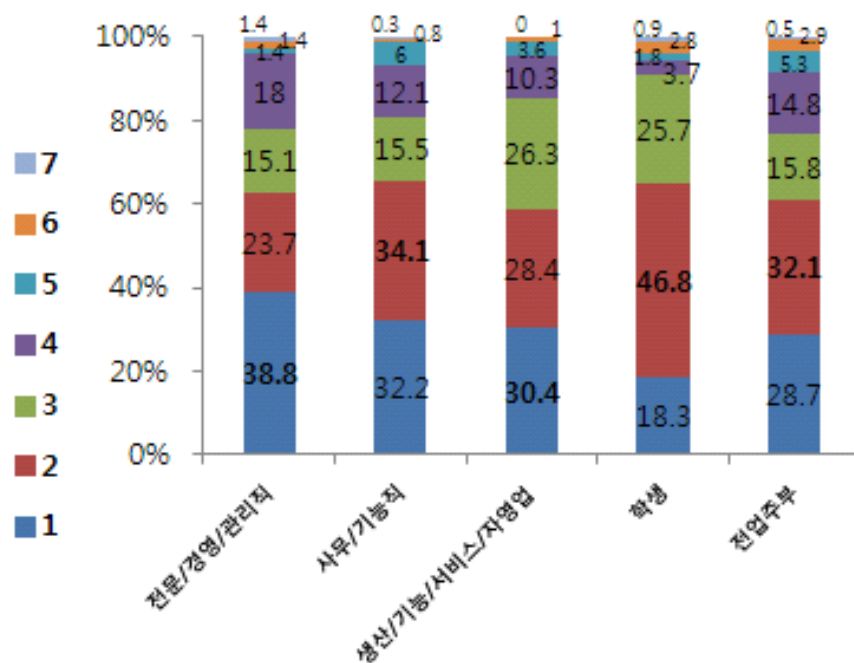
응답자의 직업군별 응답에 따르면, 1순위로 전문직/경영직/관리직, 생산/기능직/판매/서비스직/자영업에 속한 응답자들은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사무/기능직, 학생, 전업주부는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꼽았다. 2순위에는 전문직/경영직/관리직은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을, 사무/기능직, 생산/기능직/판매/서비스직/자영업, 학생은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전업주부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 순으로 응답하였다. 3순위로는 전문직/경영직/관리직의 경우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사무/기능직은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을, 생산/기능직/판매/서비스직/자영업, 전업주부는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학생의 경우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 지원필요’를 꼽았다.

<표 2-19> 직업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구분		1	2	3	4	5	6	7	전체
1순위	전문직 /경영인 /관리직	54	33	21	25	2	2	2	139
		38.8%	23.7%	15.1%	18.0%	1.4%	1.4%	1.4%	100%
	사무/기능직	119	130	59	46	23	3	1	381
		31.2%	34.1%	15.5%	12.1%	6.0%	.8%	.3%	100%
	생산/기능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	59	55	51	20	7	2	0	194
		30.4%	28.4%	26.3%	10.3%	3.6%	1.0%	.0%	100%
	학생	20	51	28	4	2	3	1	109
		18.3%	46.8%	25.7%	3.7%	1.8%	2.8%	.9%	100%
	전업주부	60	67	33	31	11	6	1	209
		28.7%	32.1%	15.8%	14.8%	5.3%	2.9%	.5%	100%
	전체	312	336	192	126	45	16	5	1032
		30.2%	32.6%	18.6%	12.2%	4.4%	1.6%	.5%	100%
2순위	전문직 /경영인 /관리직	32	31	35	30	10	1	0	139
		23.0%	22.3%	25.2%	21.6%	7.2%	.7%	.0%	100%
	사무/기능직	108	91	72	71	36	1	2	381
		28.3%	23.9%	18.9%	18.6%	9.4%	.3%	.5%	100%
	생산/기능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	48	47	35	45	17	2	0	194
		24.7%	24.2%	18.0%	23.2%	8.8%	1.0%	.0%	100%
	학생	38	23	18	10	20	0	0	109
		34.9%	21.1%	16.5%	9.2%	18.3%	.0%	.0%	100%
	전업주부	53	58	41	38	15	3	1	209
		25.4%	27.8%	19.6%	18.2%	7.2%	1.4%	.5%	100%
	전체	279	250	201	194	98	7	3	1032
		27.0%	24.2%	19.5%	18.8%	9.5%	.7%	.3%	100%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구분		1	2	3	4	5	6	7	전체
3순위	전문직/경영인/관리직	23	33	26	27	25	5	0	139
		16.5%	23.7%	18.7%	19.4%	18.0%	3.6%	.0%	100%
	사무/기능직	70	56	88	84	71	10	2	381
		18.4%	14.7%	23.1%	22.0%	18.6%	2.6%	.5%	100%
	생산/기능직/판매/서비스직/자영업	44	24	33	52	36	4	1	194
		22.7%	12.4%	17.0%	26.8%	18.6%	2.1%	.5%	100%
	학생	25	11	21	24	26	1	1	109
		22.9%	10.1%	19.3%	22.0%	23.9%	.9%	.9%	100%
	전업주부	42	34	33	56	40	4	0	209
		20.1%	16.3%	15.8%	26.8%	19.1%	1.9%	.0%	100%
	전체	204	158	201	243	198	24	4	1032
		19.8%	15.3%	19.5%	23.5%	19.2%	2.3%	.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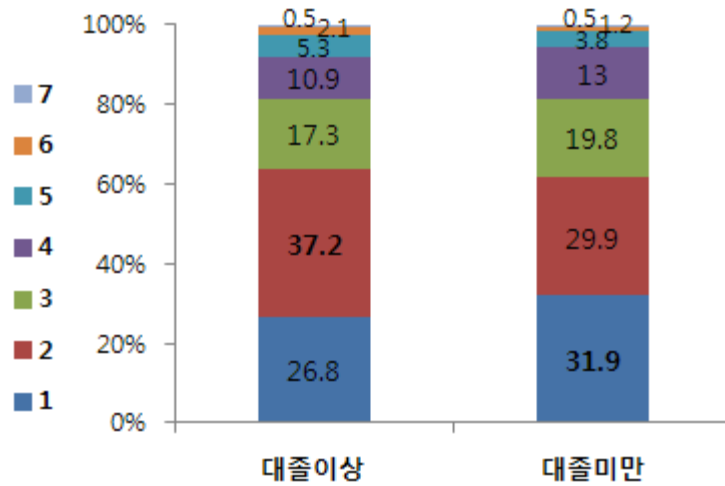
<그림 2-28> 직업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6) 학력

응답자의 학력별 분류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중 대졸이상은 1순위로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 2순위에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3순위로는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차례로 꼽았으며, 대졸미만의 응답자들은 1순위와 2순위에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로 동일한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3순위로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가장 많이 응답하여 대졸 이상 응답자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2-20> 학력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구분			1	2	3	4	5	6	7	전체
1순위	대졸 이상	빈도	116	161	75	47	23	9	2	433
		퍼센트	26.8%	37.2%	17.3%	10.9%	5.3%	2.1%	.5%	100%
	대졸 미만	빈도	211	198	131	86	25	8	3	662
		퍼센트	31.9%	29.9%	19.8%	13.0%	3.8%	1.2%	.5%	100%
	전체	빈도	327	359	206	133	48	17	5	1095
		퍼센트	29.9%	32.8%	18.8%	12.1%	4.4%	1.6%	.5%	100%
2순위	대졸 이상	빈도	122	100	77	82	46	4	2	433
		퍼센트	28.2%	23.1%	17.8%	18.9%	10.6%	.9%	.5%	100%
	대졸 미만	빈도	173	158	140	131	56	3	1	662
		퍼센트	26.1%	23.9%	21.1%	19.8%	8.5%	.5%	.2%	100%
	전체	빈도	295	258	217	213	102	7	3	1095
		퍼센트	26.9%	23.6%	19.8%	19.5%	9.3%	.6%	.3%	100%
3순위	대졸 이상	빈도	83	58	66	115	97	12	2	433
		퍼센트	19.2%	13.4%	15.2%	26.6%	22.4%	2.8%	.5%	100%
	대졸 미만	빈도	136	111	143	144	112	13	3	662
		퍼센트	20.5%	16.8%	21.6%	21.8%	16.9%	2.0%	.5%	100%
	전체	빈도	219	169	209	259	209	25	5	1095
		퍼센트	20.0%	15.4%	19.1%	23.7%	19.1%	2.3%	.5%	100%



<그림 2-29> 학력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7)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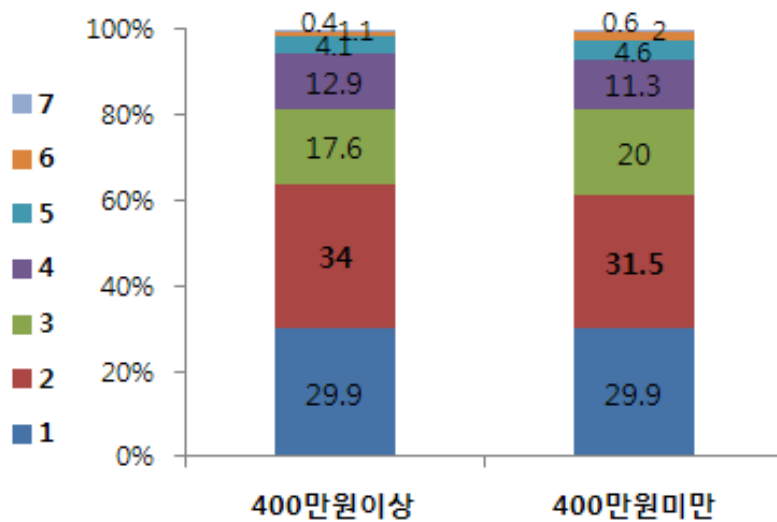
응답자의 소득 분류별 응답에 따르면, 400만원 이상 집단은 1순위와 2순위에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동일하게 응답하였으며, 3순위로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필요’를 꼽았다. 반면 400만원 미만의 응답자들은 1순위와 2순위에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3순위로는 400만원 이상의 집단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2-21> 소득수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구분			1	2	3	4	5	6	7	전체
1순위	400만원 이상	빈도	166	189	98	72	23	6	2	539
		퍼센트	29.9%	34.0%	17.6%	12.9%	4.1%	1.1%	0.4%	100%
	400만원 미만	빈도	161	170	108	61	25	11	3	556
		퍼센트	29.9%	31.5%	20.0%	11.3%	4.6%	2.0%	0.6%	100%
	전체	빈도	327	359	206	133	48	17	5	1095
		퍼센트	29.9%	32.8%	18.8%	12.1%	4.4%	1.6%	0.5%	100%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구분			1	2	3	4	5	6	7	전체
2순위	대졸 이상	빈도	134	136	104	112	48	3	2	539
		퍼센트	24.9%	25.2%	19.3%	20.8%	8.9%	0.6%	0.4%	100%
	대졸 미만	빈도	161	122	113	101	54	4	1	556
		퍼센트	29.0%	21.9%	20.3%	18.2%	9.7%	0.7%	0.2%	100%
	전체	빈도	295	258	217	213	102	7	3	1095
		퍼센트	26.9%	23.6%	19.8%	19.5%	9.3%	0.6%	0.3%	100%
3순위	대졸 이상	빈도	115	75	90	133	112	11	3	539
		퍼센트	21.3%	13.9%	16.7%	24.7%	20.8%	2.0%	0.6%	100%
	대졸 미만	빈도	104	94	119	126	97	14	2	556
		퍼센트	18.7%	16.9%	21.4%	22.7%	17.4%	2.5%	0.4%	100%
	전체	빈도	219	169	209	259	209	25	5	1095
		퍼센트	20.0%	15.4%	19.1%	23.7%	19.1%	2.3%	0.5%	100%



<그림 2-30> 소득수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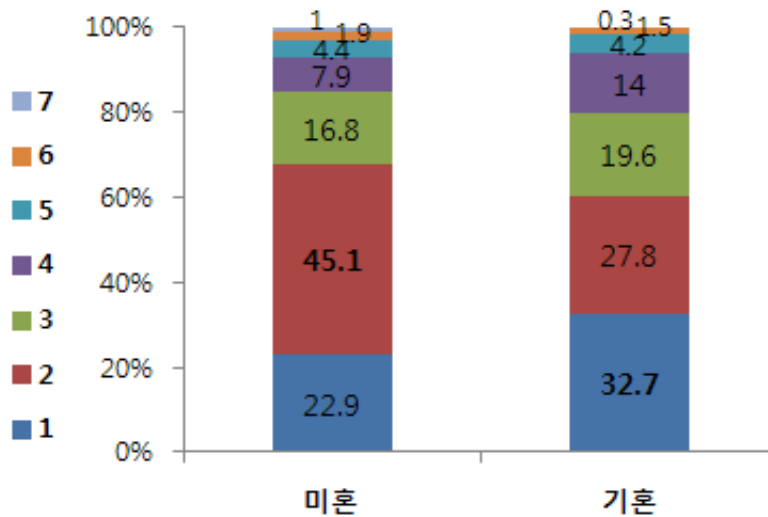
(8) 혼인 여부

응답자들의 미혼/기혼여부에 따른 해당 문항과의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혼자 집단의 경우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 지원필요’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기혼자 집단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 응답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순위에는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꼽았다.

<표 2-22> 혼인 여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구분			1	2	3	4	5	6	7	전체
1순위	미혼	빈도	72	142	53	25	14	6	3	315
		퍼센트	22.9%	45.1%	16.8%	7.9%	4.4%	1.9%	1.0%	100%
	기혼	빈도	239	203	143	102	31	11	2	731
		퍼센트	32.7%	27.8%	19.6%	14.0%	4.2%	1.5%	0.3%	100%
	전체	빈도	311	345	196	127	45	17	5	1046
		퍼센트	29.7%	33.0%	18.7%	12.1%	4.3%	1.6%	0.5%	100%
2순위	미혼	빈도	104	70	55	47	39	0	0	315
		퍼센트	33.0%	22.2%	17.5%	14.9%	12.4%	0.0%	0.0%	100%
	기혼	빈도	183	176	151	149	62	7	3	731
		퍼센트	25.0%	24.1%	20.7%	20.4%	8.5%	1.0%	0.4%	100%
	전체	빈도	287	246	206	196	101	7	3	1046
		퍼센트	27.4%	23.5%	19.7%	18.7%	9.7%	0.7%	0.3%	100%
3순위	미혼	빈도	58	41	68	69	75	4	0	315
		퍼센트	18.4%	13.0%	21.6%	21.9%	23.8%	1.3%	0.0%	100%
	기혼	빈도	143	123	135	182	122	21	5	731
		퍼센트	19.6%	16.8%	18.5%	24.9%	16.7%	2.9%	0.7%	100%
	전체	빈도	201	164	203	251	197	25	5	1046
		퍼센트	19.2%	15.7%	19.4%	24.0%	18.8%	2.4%	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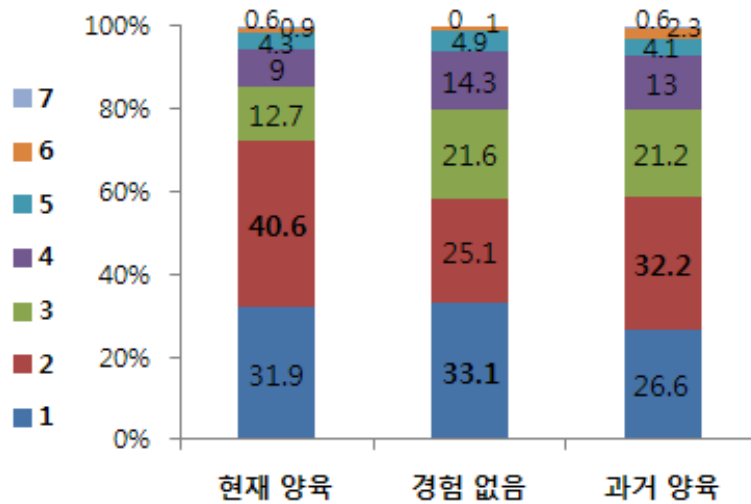
<그림 2-31> 혼인 여부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9) 반려동물 양육경험

반려동물의 양육 및 양육 경험 유무에 따른 문항의 교차분석 결과, 1순위의 경우, 기르고 있거나 과거에 길러본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1순위로 꼽았으며, 기르지 않는 집단은 ‘동물보호법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로는 기르고 있는 집단과 과거에 길러본 경험이 있는 집단은 ‘동물보호법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기르지 않는 집단은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순위로는 기르고 있는 집단과 기르지 않는 집단은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과거에 길러본 경험이 있는 집단은 2순위 응답과 같은 ‘동물보호법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2-23> 반려동물 양육경험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구분			1	2	3	4	5	6	7	전체
1순위	현재 양육	빈도	103	131	41	29	14	3	2	323
		퍼센트	31.9%	40.6%	12.7%	9.0%	4.3%	0.9%	0.6%	100%
	경험 없음	빈도	95	72	62	41	14	3	0	287
		퍼센트	33.1%	25.1%	21.6%	14.3%	4.9%	1.0%	0.0%	100%
	과거 양육	빈도	129	156	103	63	20	11	3	485
		퍼센트	26.6%	32.2%	21.2%	13.0%	4.1%	2.3%	0.6%	100%
	전체	빈도	327	359	206	133	48	17	5	1095
		퍼센트	29.9%	32.8%	18.8%	12.1%	4.4%	1.6%	0.5%	100%
2순위	현재 양육	빈도	98	77	54	51	41	2	0	323
		퍼센트	30.3%	23.8%	16.7%	15.8%	12.7%	0.6%	0.0%	100%
	경험 없음	빈도	60	70	66	66	21	2	2	287
		퍼센트	20.9%	24.4%	23.0%	23.0%	7.3%	0.7%	0.7%	100%
	과거 양육	빈도	137	111	97	96	40	3	1	485
		퍼센트	28.2%	22.9%	20.0%	19.8%	8.2%	0.6%	0.2%	100%
	전체	빈도	295	258	217	213	102	7	3	1095
		퍼센트	26.9%	23.6%	19.8%	19.5%	9.3%	0.6%	0.3%	100%
3순위	현재 양육	빈도	52	47	57	83	74	10	0	323
		퍼센트	16.1%	14.6%	17.6%	25.7%	22.9%	3.1%	0.0%	100%
	경험 없음	빈도	52	49	47	69	62	7	1	287
		퍼센트	18.1%	17.1%	16.4%	24.0%	21.6%	2.4%	0.3%	100%
	과거 양육	빈도	115	73	105	107	73	8	4	485
		퍼센트	23.7%	15.1%	21.6%	22.1%	15.1%	1.6%	0.8%	100%
	전체	빈도	219	169	209	259	209	25	5	1095
		퍼센트	20.0%	15.4%	19.1%	23.7%	19.1%	2.3%	0.5%	100%



<그림 2-32> 반려동물 양육경험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10) 가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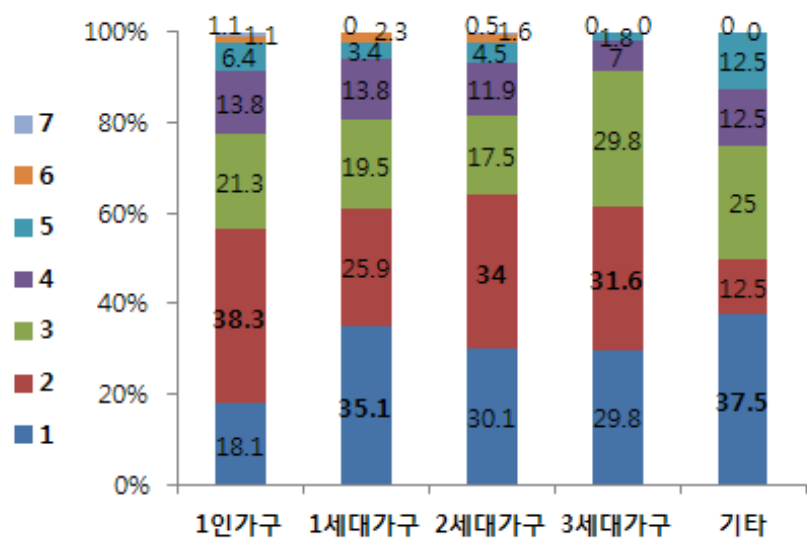
세대 크기별 분류에 따른 문항의 교차분석 결과, 1순위의 경우, 1인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가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1세대 가구와 기타 집단이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각각 1순위로 꼽았으며, 2순위에 1인 가구, 2세대 가구가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1세대 가구가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3세대 가구는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을, 기타 집단은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응답하였다. 3순위로는 1인 가구가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와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을 동일한 비율로 응답하였고, 1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는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필요’를, 3세대 가구는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기타 집단은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각자 선택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가구 형태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구분		1	2	3	4	5	6	7	전체
1순위	1인 가구	17	36	20	13	6	1	1	94
		18.1%	38.3%	21.3%	13.8%	6.4%	1.1%	1.1%	100%
	1세대 가구 (부부)	61	45	34	24	6	4	0	174
		35.1%	25.9%	19.5%	13.8%	3.4%	2.3%	0.0%	100%
	2세대 가구 (부모, 자녀)	229	259	133	91	34	12	4	762
		30.1%	34.0%	17.5%	11.9%	4.5%	1.6%	0.5%	100%
	3세대 가구 (조부모, 부모, 자녀)	17	18	17	4	1	0	0	57
		29.8%	31.6%	29.8%	7.0%	1.8%	0.0%	0.0%	100%
	기타	3	1	2	1	1	0	0	8
		37.5%	12.5%	25.0%	12.5%	12.5%	0.0%	0.0%	100%
	전체	327	359	206	133	48	17	5	1095
		29.9%	32.8%	18.8%	12.1%	4.4%	1.6%	0.5%	100%
2순위	1인 가구	32	20	16	18	8	0	0	94
		34.0%	21.3%	17.0%	19.1%	8.5%	0.0%	0.0%	100%
	1세대 가구 (부부)	40	46	38	37	12	1	0	174
		23.0%	26.4%	21.8%	21.3%	6.9%	0.6%	0.0%	100%
	2세대 가구 (부모, 자녀)	212	178	144	139	80	6	3	762
		27.8%	23.4%	18.9%	18.2%	10.5%	0.8%	0.4%	100%
	3세대 가구 (조부모, 부모, 자녀)	10	11	18	16	2	0	0	57
		17.5%	19.3%	31.6%	28.1%	3.5%	0.0%	0.0%	100%
	기타	1	3	1	3	0	0	0	8
		12.5%	37.5%	12.5%	37.5%	0.0%	0.0%	0.0%	100%
	전체	295	258	217	213	102	7	3	1095
		26.9%	23.6%	19.8%	19.5%	9.3%	0.6%	0.3%	100%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구분		1	2	3	4	5	6	7	전체
3순위	1인 가구	21	15	21	20	15	2	0	94
		22.3%	16.0%	22.3%	21.3%	16.0%	2.1%	0.0%	100%
	1세대 가구 (부부)	35	24	24	48	36	3	4	174
		20.1%	13.8%	13.8%	27.6%	20.7%	1.7%	2.3%	100%
	2세대 가구 (부모, 자녀)	148	122	155	175	142	19	1	762
		19.4%	16.0%	20.3%	23.0%	18.6%	2.5%	0.1%	100%
	3세대 가구 (조부모, 부모, 자녀)	15	8	8	14	11	1	0	57
		26.3%	14.0%	14.0%	24.6%	19.3%	1.8%	0.0%	100%
	기타	0	0	1	2	5	0	0	8
		0.0%	0.0%	12.5%	25.0%	62.5%	0.0%	0.0%	100%
	전체	219	169	209	259	209	25	5	1095
		20.0%	15.4%	19.1%	23.7%	19.1%	2.3%	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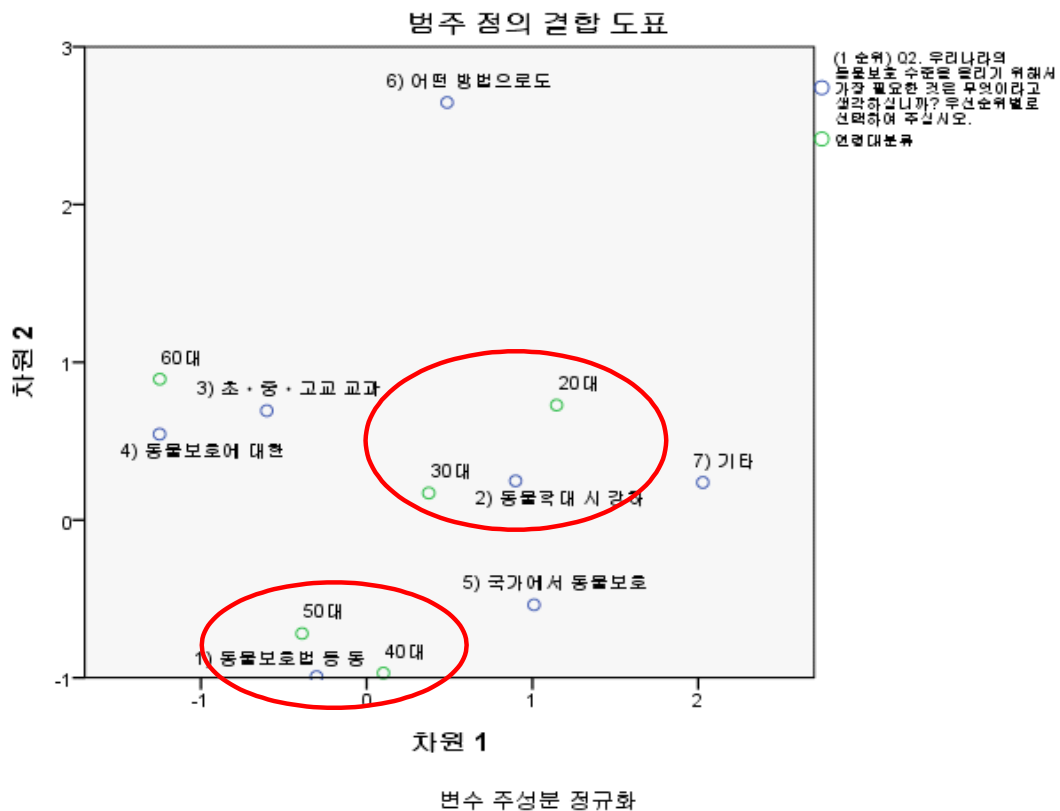


<그림 2-33> 가구 형태에 따른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방안(1순위)

4-3. 대응 분석

앞서 살펴본 문항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 분석의 경우 20~30대와 사무직/기능직 학생, 전업주부는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꼽았다. 전문직/경영직/관리직, 응답자들은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는 연령대 중 40~60대층의 결과와 중복된다는 점이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오피니언 리더 층에서는 처벌보다는 법안을, 20~30대, 사무/기능직에 주로 분포한 일반 시민층을 분포로 보았을 때는 처벌에 좀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령대, 직업군, 질문 문항간의 대응분석을 실시해, 각각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³⁾

(1) 연령과 문항간 대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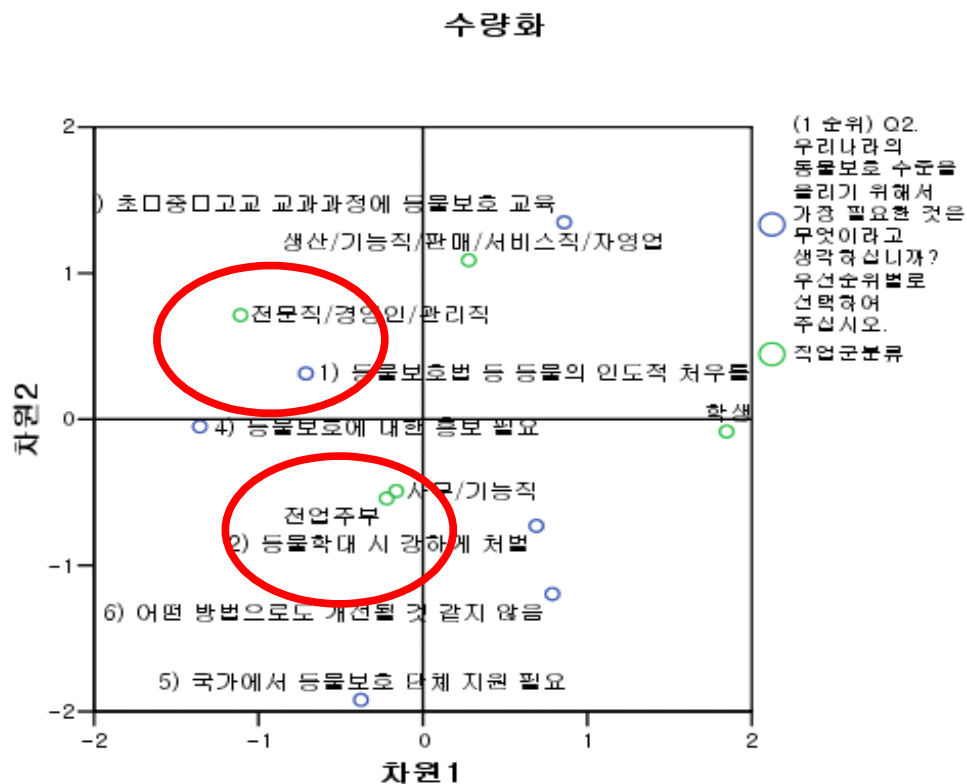


<그림 2-34> 연령대와 문항간 대응분석 결과

3) 대응분석이란 동일한 범주에 있는 개체들은 가까이, 그리고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개체들은 서로 멀리 위치하도록 공간상의 위치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교차분석에서 발견했던 대로, 20~30대의 경우,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 보다는,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50대의 경우,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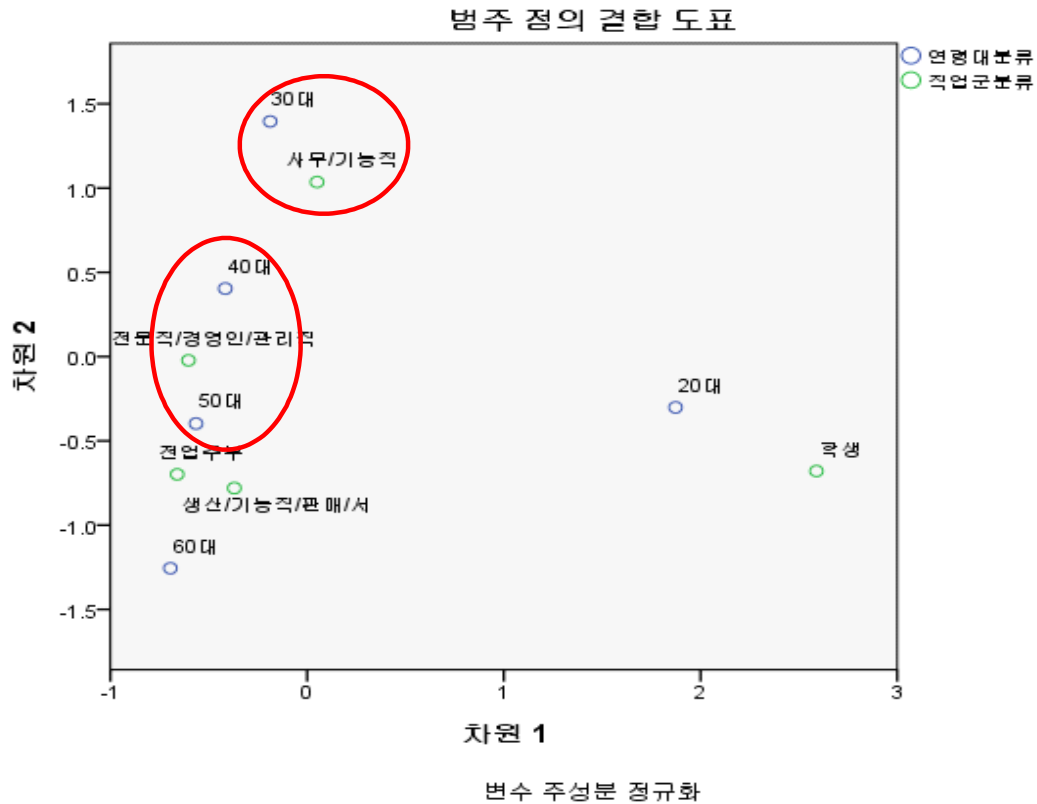
(2) 직업군과 문항간 대응분석



<그림 2-35> 직업군과 문항간 대응분석 결과

직업별 대응 분석을 볼 때, 전업주부, 사무/기능직의 경우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경영인/관리직의 경우,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연령과 직업군간 대응분석



<그림 2-36> 연령과 직업군간 대응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직업과 연령대간 관계를 대응분석으로 보았을 때, 사무/기능직의 경우 실제로 30대가 더 가까웠으며, 전문직/경영인/관리직의 경우 40~50대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중 40~50대 이면서 전문직/경영인/관리직인 응답자들이 20~30대 응답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이러한 집단들은 사회에서 여론을 이끌고 의사결정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부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 보다는,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더 선호하며, 20~30대이며 사무/기능직에 더 집중된 ‘일반 시민 집단’의 경우, 대체로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언론활동 분석

1. 동물원법 제정 환경 조성

1-1. 동물원법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변화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이슈를 제기했던 동물복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2012년 ‘제돌이 방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민들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제돌이 방류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주요 동물원의 동물학대 실태가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동물보호단체들의 주도로 정책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원법의 제정에 까지 이르고 있다.

‘제돌이 방류’는 2011년 7월에 남방큰돌고래의 불법 포획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해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의 동물보호단체의 돌고래쇼 중단과 함께 제돌이의 야생방류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2012년 4월 1심 판결을 통해 불법 포획한 어부와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사들인 공연업체(제주 퍼시픽랜드)의 유죄가 선고되면서 돌고래에 대한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2012년 3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돌이의 방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제돌이 방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신문 매체는 물론 MBC, SBS등 주목도 높은 지상파 방송의 스페셜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MBC와 SBS에서는 각각 120분, 180분의 시간을 할애해 제돌이 방류와 돌고래 몰수 판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신문 및 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제돌이 이슈에 대해 게재된 기사의 총 금액가치는 약 82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업의 홍보성과와 비교할 때에도 예산 규모의 한계를 극복한 탁월한 성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정책 이슈의 한계를 뛰어넘어, 해당 이슈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의 반증이기도 하다.

동물 쇼는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인식도 확산되면서 시민들도 일부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형태의 쇼는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돌이의

방류는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된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3년 9월에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원법 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동물원 설립 허가,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동물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등 관리위원회를 두고 동물원등 설립의 허가·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게 함(안 제4조).
- 동물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 동물원 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7조제2항).
- 동물원 등의 장은 동물원 등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수의학적 처치를 요할 때에는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의 장이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동물원 등의 장에게 구상할 수 있음(안 제8조).
- 동물원 등의 장에게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동물의 개체 수, 폐사, 질병의 발생에 관한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사육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 동물원 등의 장은 동물원 등을 폐원(閉院)하려는 하는 경우 동물을 다른 동물원 등에 양도·증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물원등의 장 등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동물원등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동물원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여러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한 이슈화로 동물원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물 복지와 동물원법에 대한 대중

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 쟁점 및 주장

동물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주요 사건 및 이슈를 통한 쟁점과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 복지와 동물원법 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제돌이 방류’, ‘서울대공원 호랑이 사육사 공격 사건’ 그리고 ‘거제씨월드 이슈’가 있다. 동물복지 이슈를 선도해 온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들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사업자, 해당 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 왔다.

주요 이슈에 나타난 메시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동물 복지와 여가교육 개념 간의 대립이다. 두 번째는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 간의 대립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에 대한 학대라는 의견과 관광자원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에서 동물원과 동물쇼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동물 복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인간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로 동물을 가두고 동물원을 운영할 권리가 인간에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동물학대의 결과인 동물쇼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보다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여 만들어지는 동물쇼 대신 동물 보호 및 생태교육의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에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원법을 통해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공적인 규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원수족관 협회는 동물원법이 사실상 동물원 규제법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사업자들은 WAZA(World Association of Zoo and Aquarium)와 같은 민간 동물원 스스로 기준으로 세워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63씨월드 등이 WAZA의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사업자들의 모임인 WAZA에 기준을 정하도록 맡겨두는 것에 대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강제성 없는 자정능력의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한겨레, 2013.8.2.)

WAZA 회원사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동물원들은 지켜야 할 사육기준이 없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orean Association of Zoo and Aquarium, 이하 KAZA로 표기) 소속으로만 활동하고 있다. 동물학대로 수차례 이슈가 된 테마동물원 주주 등도 KAZA 회원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보호법안도 없이 사업자의 자정노력만으로 동물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이다. 동물원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국내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감시를 시민단체가 아닌 KAZA에서 맡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반대에 부딪혔다.

세 번째 쟁점은 생명을 학대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거제씨월드 이슈와 관련하여 거제시는 지역주민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였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연장 없이 체험 시설로 구성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돌고래를 수입한 곳이 잔혹한 포획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타이지’지역이라는 점에서 비인도적인 포획방법과 국제적 보호종인 돌고래의 야생 개체수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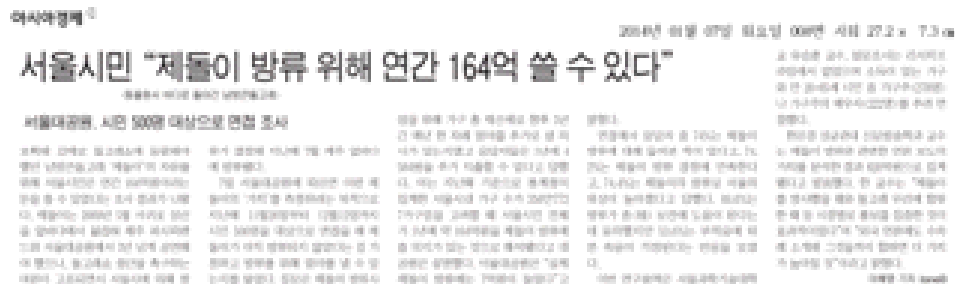
1-3. 여론의 변화

제돌이 이슈를 계기로 여론은 대부분 동물쇼 폐지 및 동물복지 향상에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 2012년 서울시민 1,000명 중 52%가 돌고래쇼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 2012.5.9.), 2013년 8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9%가 돌고래쇼의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78%의 응답자가 돌고래쇼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의 2013년도 설문에서도 전국 성인남녀 1,3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63%가 돌고래쇼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 서울대공원에서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3%가 ‘동물복지활동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많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제돌이 방류 결정 초기에만 해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돌고래쇼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컸던 반면에 제돌이 방류를 기점으로 점차 돌고래쇼의 폐

지뿐만 아니라 동물의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 2014년 1월 7일자 아시아경제에 게재된 제돌이 방류 성과 관련 기사

1-4. 주요 관련 이슈 분석

a. 제돌이 방류

제돌이 방류는 이슈화 국면에서 적절한 기획 PR로 우호여론을 조성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문, 방송 등에 게재된 기사의 홍보성과를 금액 가치로 환산하면 820.3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돌이 방류라는 이슈에 대해 임팩트 있는 홍보가 전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돌이 방류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단체, 서울시 등은 동물복지, 정치성, 방사 후 생존가능성 등 다양한 논란에 대해 전문가 그룹 기구, 사설,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한 대응을 진행하였다. 서울대공원은 WAZA 총회에서 제돌이 방류에 대해 발표했으며, 동물자유연대의 2회에 걸친 국제 학술대회 개최, 릭 오베리 등 세계적 명사 초청과 관련된 기사 창출은 국내 홍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 50여개의 나라에 서울시의 선진 동물복지 정책을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활동이 제돌이 방류에 대한 공감과 지지 여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사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제돌이 방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어린이 서적 발간, 전문가 인터뷰, 방사 후 적응과정에 대한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관련 이슈를 주도하면서 찬반이 나누어졌던 이슈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 비판적이었던 보수 언론매체들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론의 변화에 따라

비판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핫핑크 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제돌이 방류를 요구하면서 이슈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이슈화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2> 제돌이 방류 관련 지면 게재 기사 이미지

b. 서울동물원 호랑이 참사

서울동물원의 호랑이 ‘로스토프’가 사육사를 공격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고 사건 발생 시점인 2013년 11월 25일 이후 전국 일간지 22개 매체를 기준으로 95건이 지면에 게재되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배치와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생태학자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동물복지에 적용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을 보였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원 관리에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기존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부각되었다. 환경부는 사고 발생 이후 기존 야생생물법상 기준이 없던 사육시설에 대한 법률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그림 3-3> 서울동물원 호랑이 참사 관련 지면 기사 이미지

c. 거제씨월드

거제씨월드 이슈의 경우에는 관광 활성화를 주장하는 지역주민과 동물단체 간의 건설 찬반 대립의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기사가 게재됐다. 거제시와 지역주민들은 돌고래 체험시설은 거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해양 도시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거제씨월드 건설과 관련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돌고래 공연은 대중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돌고래 사육이 동물학대인지의 여부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1개국에 돌고래 공연장이 존재한다. 또한 건설 단계에서도 환경단체의 주장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공연장 없이 모든 시설을 체험 위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와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돌고래 전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설명은 다르다. 시설 내 번식률이 낮은 돌고래의 특성상 전시를 위한 돌고래들은 대부분 야생에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곧 돌고래의 야생 개체수 위협과 멸종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돌핀프로젝트는 ‘거제씨월드 건립반대’ 국제 서명운동을 벌이며 연대 이슈화를 진행하였다.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 센터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언론 보도에서도 찬반 대립 의견을 함께 제시하는 보도 및 기고가 게재되었다. 이와 함께 과거 제돌이 이슈와 함께 연계되면서 동물 학대 및 돌고래쇼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부정적 기사가 다수 게재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이슈였다고 평가된다.



<그림 3-4> 거세씨월드 관련 지면 게재 기사 이미지

2. 언론보도 분석

2-1. 분석 개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합지 및 경제지, 통신사 그리고 전문지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았다. 분석은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 분석, 동물원법에 관한 보도 분석 그리고 매체별로 사실 및 칼럼의 논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검색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한 전체 매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2년을 지정하였다.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정성분석은 온라인 기사가 아닌 지면에 게재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종합지 12개 매체, 경제지 11개 매체로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일간지이다. 세부적인 매체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정성분석 대상 매체

구분	매체명 (가나다 순)
종합지(12)	경향,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11)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전자신문,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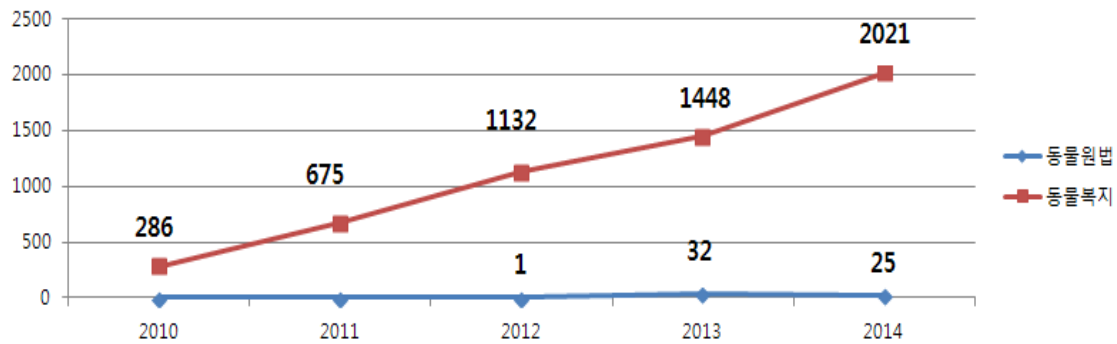
지면에 게재된 기사 가운데 동물복지 및 동물원법 관련 기획기사 및 주요 스트레이트 기사 그리고 기타 관련 이슈 기사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동물복지 관련 이슈 가운데 동물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AI 살처분 반대, 반려동물, 동물복지농가 등의 이슈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2. 정량분석

a. 보도 추이분석

2010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동물복지에 관한 보도 건수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2010년 286건 수준에 불과하던 동물복지에 관련된 보도 건수가 2012년 제돌이 방류 이슈가 등장하면서 1,13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13년 서울동물원의 호랑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 2014년에는 2,021건으로 증가해 2012년 대비 보도된 기사건수가 179% 증가하였다. 2010년의 286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해 동물복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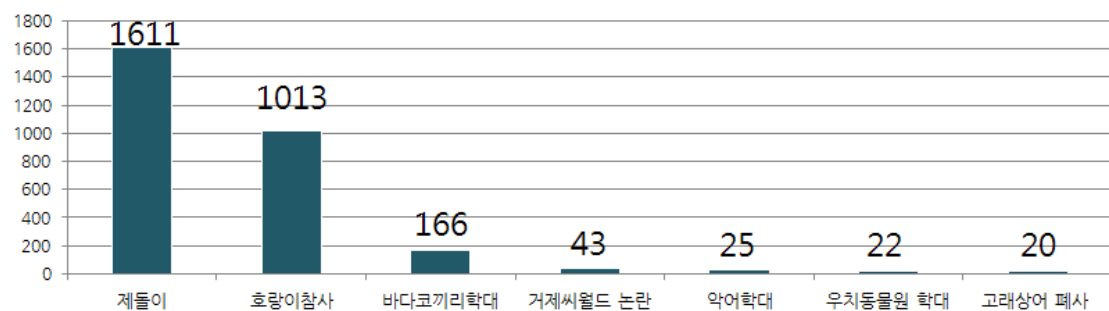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물원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보도는 동물원법이 개정이 발의된 2013년에 32건, 2014년에는 25건으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법에 대한 지지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5> 동물복지 및 동물원법 보도 건수 추이

b. 이슈별 보도 분석

동물원법과 동물복지가 언급된 전체 기사 가운데 주요 이슈 보도 기사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요 이슈 발생 시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물원법 및 동물복지에 대한 주요 이슈를 계기로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6> 주요 이슈 보도 건수 (2013~2014년 누적)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간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제돌이 방류’, ‘서울동물원 호랑이 참사’, ‘거제씨월드 논란’, ‘테마동물원 쥬쥬의 바다코끼리 학대, 악어 학대’, ‘원숭이학교 학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제돌이 방류와 서울동물원 호랑이 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슈가 크게 확산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두 이슈를 제외하면 테마동물원 쥬쥬의 바다코끼리와 악어 학대가 총 188건으로 다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치동물원 학대, 고래상어 폐사 등도 언론에 보도가 됐다

는 것은 그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돌이 방류와 호랑이 참사와 같은 대형 이슈 외에 기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동물보호단체들이 문제제기를 이어가면서 동물복지와 동물원법에 대한 화제성과 대중의 관심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3. 정성분석

a. 핵심 메시지 분석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을 위한 행동 전경옥 대표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각종 이슈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꾸준히 코멘트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동물원법 제정’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2000년에 설립된 동물자유연대는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 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과 교육 등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대표 동물 보호단체로 동물보호 이슈를 제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핵심메시지의 근거와 주장은 다음과 같다

<표 3-2> 주요 메시지의 근거와 주장

구분	메시지 포인트
근거	국내 동물원, 수족관을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다
	조련 과정에서 학대는 불가피하다
	잡은 동물원 사고의 원인은 동물원 사육환경의 문제이다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동물원 운영과 사육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구타를 일삼고, 쇼에 동원된 동물을 학대해 온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직접 동물원을 인증하게 하면 안 된다
	멸종위기종의 복원과 동물보호 교육을 위해서도 정부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주장	동물원에 최소한의 사육기준을 제시하고 학대를 방지하며 개체수, 폐사, 질병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규정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을 촉구 한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메시지는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이슈 분석을 통한 현실 진단, 선진국의 사례,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메시지의 핵심 주장은 “동물원에 최소한의 사육 기준을 제시하고 학대를 방지하며 개체수, 폐사, 질병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규정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b. 동물원법 보도 현황

동물원법과 관련된 지면에 게재된 기사 검색을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기간 동안 일간지 및 경제지 22개 매체 지면에 게재된 기사를 조사하였다. 검색결과에서 동물원법과 관련하여 총 12건의 관련기사가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 동물원법을 지지하는 기사는 11건이었으며, 중립 논조의 기사는 1건, 그리고 반대하는 기사는 없었다.

<표 3-3> 동물원법 주요 보도 현황

구분	내용	날짜	매체
동물원법 지지	[생명]유리관에 갇힌 재규어는 뭘 수가 없네	14/04/19	한겨레
	수족관 돌고래의 ‘슬픈 진실’	14/03/29	한국일보
	[생명] 원숭이학교 실태	14/02/15	한겨레
	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동물원…대책없나	14/01/14	세계일보
	말 많고 탈 많은 서울대공원 맹수사 가보니	14/01/09	헤럴드경제
	서울시 “동물원 관리, 정부가 나서라”	14/01/07	아시아경제
	고양이등록 의무화 질병보험강화…관리체계…	13/12/24	아시아투데이
	비전문 사육사와 스트레스 쌓인 맹수의 잘못된 만남	13/12/14	한겨레
	인재인가 ‘호환’인가…전문가들 “안락사 안돼”	13/11/26	경향신문
	동물학대 사설동물원, 동물원 인증기구에 포함논란	13/10/07	경향신문
	[생명] 동물원법 국회통과-동물감옥 부술순 없지만..	13/08/03	한겨레
중립 보도	동물의 권리vs동물 볼 권리	13/10/09	국민일보

동물원법에 대한 보도는 주요 이슈와 연관된 기획기사 위주로 게재되었다. 비교적 지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사가 많아 건수에 비해 임팩트가 크게 게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사를 살펴보면 시민단체 및 학자 등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다수

인용되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면에 게재된 동물원법 관련 보도 기사 전체 건수는 적으나 한겨레에 게재된 기사 4건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매체에서 일관되게 법안을 지지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를 예로 들어 동물원법을 지지하는 쪽에 비중을 실은 기사가 다수 게재되었다.

<표 3-4> 동물원법 보도에 나타난 주요 메시지

매체명	날짜	메시지 내용
한겨레	14/04/19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원에 최소한의 사육 기준을 제시하고 학대를 방지하며 개체수, 폐사, 질병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물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14/01/14	“문제는 번번이 조사를 취했음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야생동물은 물론 동물원에 전시되는 동물들의 사육,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한겨레	13/12/14	“동물원의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동물원법에 주목한다.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동물원법 법안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경향신문	13/10/07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동물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이 꼽힌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원법이 발의돼 있다”

동물원법에 대한 이해관계자별로 주요 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관계에 서는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동물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서울동물원의 호랑이 사육사 공격 사건 발생 후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동물원을 포함한 서울대공원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동물원 관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의 설치,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동물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동물원의 동물학대 실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3-7> 동물원법 관련 주요 보도 기사 이미지

c. 동물복지 보도 현황

동물복지 관련 언론 보도에서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기고가 다수 게재되었다. 동물복지의 수준이 선진적인 문화 수준의 척도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단체들은 동물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동물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물복지 이슈를 언론에 노출시켰다. 동물학대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되면 기고와 코멘트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대응하였다. 언론 노출 극대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국제단체들과 연계하기도 하였으며,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 등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초기 제도가 방류 이슈 당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

치성 논란이 있었고, 주로 진보 성향의 매체 중심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하지만 점차 여론이 동물복지를 지지하고 서울동물원의 호랑이 참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다수의 언론이 동물복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사가 주로 게재되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성향의 매체에서도 우호적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그림 3-8> 동물복지 관련 주요 기사 이미지

언론 매체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기사가 다수 게재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진보성향의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활동, 전문가 기고 및 칼럼 등의 형태로 한정된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게재되는 기사의 형태도 보다 다양해졌다. 이색 인물의 인터뷰, 해외 동물원 탐방, 이슈 분석 등의 형태로 다양한 기획기사가 게재되었다.

동물복지와 관련한 주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간지 및 경제지 22개 매체에 게재된 기사를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결과에서 동물복지 관련 기사 총 470건 가운데 동물권과 연관된 기획성 기사만을

추출해 총 17건의 주요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17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해보면, 동물권 증진을 지지하는 기사가 14건으로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였다. 중립에서 작성된 기사는 3건이었으며, 동물권 증진에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동물복지 관련 기사 리스트

구분	내용	날짜	매체
동물권 지지	세광고 최혁준군 ‘국내 동물원 평가보고서’퍼내	14/12/29	한겨레
	광활한 초원에서 망원경으로 코뿔소를...	14/09/13	한겨레
	불법 수입 후 사설동물원서 쇼하는 오랑이	14/08/16	경향신문
	제돌이 바다로 돌려보낸지 1년...	14/07/11	한겨레
	수족관 갇힌 ‘슬픈 재규어’	14/04/12	경향신문
	당신들 돈벌이위해 날 죽일 권리가 있나요	14/04/08	서울신문
	동물 칭찬훈련 전문가 마거릿 휘태커 방한	14/04/01	경향신문
	호랑이 우리 두배...‘동물복지’에는 한걸음	14/03/06	한겨레
	동물원의 안락사, 동물보호 위한 조치라는데...	14/02/21	한국일보
	호랑이 탈출사고 서울대공원 혁신위 출범	14/01/07	헤럴드경제
	돌고래 방사 그 후	13/12/28	한겨레
	멸종위기동물 사육시설 관리기준 만든다	13/12/18	경향신문
	문화과학 겨울호서 동물권리 이례적 특집	13/12/09	경향신문
	[티타임] 전경옥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인터뷰	13/11/26	아시아경제
중립	[쫓인 서울] 또 논란 휩싸인 ‘동물복지’	14/12/02	서울신문
	[이슈추적] 어찌할까...서울시 동물복지딜레마	14/01/07	중앙일보
	호랑이굴에 갇힌 박원순표 동물복지	13/12/05	아시아경제

동물권 증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28일자 한겨레신문에는 “11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 숨진 사고가 발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동물원이라는 감옥에 갇힌 동물의 스트레스와 이런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동물원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제돌이와 함께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진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대중의 동물권에 대한 이해도를 제

고하고 인지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d. 사설 및 칼럼 보도 현황

동물복지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해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바를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사설과 칼럼의 논조를 분석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지면에 게재된 사설과 칼럼 중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설과 칼럼을 분석했다. 조사결과에서 동물원 및 동물원법에 관해 지면에 게재된 사설과 칼럼은 총 7건이 검색되었다.

분석결과 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사설 및 칼럼을 통해 직접적으로 동물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보다는 주요 이슈를 계기로 동물복지에 대한 자성과 이를 위한 법안 개정, 인식 변화 등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주된 메시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재된 매체를 살펴보면 전체 8건 가운데 한겨레가 3건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맹수를 가둘 최소한의 자격 (중앙일보, 2013. 11. 29.)’에 대해 칼럼을 게재했고 ‘선진국 사례-유럽과 남미 등 많은 나라가 돌고래장 건립을 불허하고 있다(동아일보, 2013.7.20.)’를 언급하기도 했다.

<표 3-6> 동물원법에 관한 사설 및 칼럼 리스트

구분	내용	날짜	매체
동물원법 지지	[김선영의 드담드담] 동물과 인간이 함께 치유...	14/10/11	한겨레
	동물복지는 사회의 생명 감수성 가늠자	14/09/30	한겨레
	[시사풍향계] 동물권 회복이 인권의 회복	14/02/20	국민일보
	[한겨레프리즘] 마리우스를 추도하며	14/02/17	한겨레
	[시론] 서울대공원의 허황된 꿈보다 동물복지를	13/12/20	서울신문
	[이규연의 시시각각] 우리에게 맹수 가둘 자격있나	13/11/29	중앙일보
	[횡설수설]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13/07/20	동아일보
	[녹색세상] 호랑이 크레인, 동물원 벽을 허물다	13/05/08	경향신문

위 표의 사설과 칼럼에 나타난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면 2014년 2월 20일자 국민일보에서는 “최(재천)위원장은 서울대공원을 ‘자연보존센터’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한

다. 서울시 공단이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에서도 동물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공원의 이런 선택은 한편 위태해 보이기도 한다. 인권과 동물권의 회복을 위한 싸움은 5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는 지난 6년간 퇴보했기 때문이다”고 기술했다.

2014년 2월 17일자 한겨레에서는 [한겨레프리즘] 코너를 통해 “마리우스 잔혹극은 동물원의 현실에 대해 복잡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일하는 한 수의사는 안락사 기준이 엄격한 유럽의 동물원과 아무런 규정이 없는 한국 동물원을 비교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2013년 12월 20일자 서울신문 [시론]에서는 “동물원에서는 모든 동물과 동물사에 대한 운영지침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게 이번 사고를 부른 원인이라 할 수 있다...합리적인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체 동물원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2013년 11월 29일자 중앙일보 [황설수설]에서도 “우리사회는 성장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왔다. 그러다보니 배려의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의제가 너무 많다. 동물원 문제도 그 중 하나다”는 의견을 게재하였다.

2013년 5월 8일자 경향신문 [녹색세상]코너에서는 황 윤 영화감독 기고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누구나, 아무렇게나 동물원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었고 비인도적으로 동물들을 대우해도 국가가 시정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동물원 동물들은 법의 보호 밖에 있었던 것이다...동물원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그 외, 광주일보에서도 2014년 7월과 8월 동물원법 입법에 관한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2014년 8월 26일자 ‘동물원법 입법 시급하다’ 칼럼에서는 “조련사의 동물 학대는 우리 국민의 공분을 모았다. 이는 역설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제도는 국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이미 영국·뉴질랜드·오스트리아·체코·덴마크·브라질 등 해외 여러 나라들은 동물원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써 마련하고 동물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2014년 7월 29일자 ‘동물을 위한 동물원 꿈꾼다’에서는 “유난히 공원과 햇볕을 좋아하는 영국에는 리젠트파크 공원 안에 런던동물원이 있다.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

해서는 정부로부터 동물원 면허를 받아야 하고 5년 후에는 다시 갱신을 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원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뜨겁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2013년 12월 23일 주간동아는 ‘절규하는 동물원’ 특집을 통해 “동물원에서의 안전한 동물 관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치권에서도 ‘동물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동물원법에서 동물원 임무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과학적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면,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원이 아닌, 시민과 동물을 위한 진정한 동물원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는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IV. 결론

1. 인식조사 결과요약

본 조사에 참여한 약 1000여명의 응답자들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어떤 한편에도 편향되어 있지 않아, 표본 집단으로써 모집단을 예측하기에 일반화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표본의 조건하에서, 각각의 동물원법 제정과 동물보호 수준의 향상 필요성에 대해 묻는 문항들의 평균점수가 매우 높고, 현재 인식하고 있는 동물 보호 수준에 대한 점수가 낮다는 사실들은, 실질적으로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견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사 분석 결과, 국민들은 현재 동물원의 운영과 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동물 보호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실감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법·제도안건으로서 동물원법 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차분석을 통해 알게 된 결과에 따르면, 집단별로 동물원의 사회·기능적 측면에 대한 생각과, 동물원 관리 방향성에 대한 의견 제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집단 간 이견이 없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더하여 동물 관리의 명료화, 법제화된 관리와 그 기준이 될 법안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물었던 문항들에 대한 강한 동의와 중요시하는 태도 등과 함께 판단해볼 때, 이는 사회·계층적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견이 아닌, 일관되고 전반적인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표본의 변이다.

대응 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응답자중 40~50대 이면서 전문직/경영인/관리직인, 사회에서 여론을 이끌고 의사결정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부류들은 실제로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 보다는,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강화’를 더 선호하며, 20~30대이며 사무/기능직에 더 집중된 ‘일반 시민 집단’의 경우, 대체로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언론보도 분석 결과요약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제돌이 방류 및 서울동물원 호랑이 사고 이슈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큰 규모의 이슈가 발생함으로써 신문과 방송을 통해 동물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슈화 국면에서 동물복지, 정치성, 방사 후 생존가능성 등 다양한 논란에 대해 전문가 그룹이 기고, 사설,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한 적절한 기획 PR로 우호여론을 조성하는 데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초기 비판적이었던 보수 언론매체들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론의 변화에 따라 비판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서울대공원 호랑이 사고의 경우도 사고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만 그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특히 동물원에 대한 공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동물원법 제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슈를 지속시키고 활성화 하는데 기여해왔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주요 시민단체들은 동물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동물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기자회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물복지 이슈를 언론에 노출시켰다. 동물학대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되면 기고와 코멘트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대응하였다. 언론 노출 극대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국제단체들과 연계하기도 하였으며,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 등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기존에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던 진보 성향 매체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매체에서도 동물복지를 주요 이슈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슈 초기에는 보수 성향의 매체는 정치적 논리를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다수의 언론이 정치와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성숙한 사회 문화 확립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이는 그만큼 국민의 인식과 여론이 동물복지를 지지하고 동물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특정 사업자나 특정 지역주민 등의 반대측 이해관계자에 비하여 동물복지를 지지하는 대중의 폭 넓은 지지를 얻으면서 더욱 설득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시사점

본 연구는 동물원법 시행에 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여론을 파악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미디어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해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선 동물보호에 대한 여론 파악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 결과 사무/기능직이나 전업주부 등 일반적인 국민들은 “동물학대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동물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층인 전문/경영/관리직은 동물학대에 대한 단순한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정을 통해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다층적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강한 국민적 요구가 실존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본 조사결과는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실효성과 원활한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언론활동 분석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 분석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언론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를 위해 동물관련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동물이 최대한 본연의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인위적인 훈련이나 부적합한 관리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한 것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이 환기됨에 따라 관련 보도 건수도 급증했다. 2014년 기사 건수는 2012년 대비 179% 인 2천21건으로, 2010년 286건에 비해 압도

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제들이 방류 등 주요 이슈에서 정치적 해석을 시도했던 보수 매체들도 이슈가 진행되면서 점차 우호적인 입장을 개재했는데, 이는 동물 복지 수준이 곧 한 나라의 성숙한 문화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고루 개재된 가운데 꾸준히 동물원법과 동물복지에 대해 지지하는 논조를 견지해 온 ‘한겨레’, ‘경향’ 외에 보수 매체인 ‘중앙’, ‘동아’ 등에서도 우호적인 사설 및 칼럼을 개재한 것은 미디어에서도 우리 사회가 동물복지와 동물원법에 대해 진일보할 때가 되었다는 아젠다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미디어와 국민적 여론이 동물원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